

※※※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

제1회 국제 심포지움 1997년 타이페이

17세기부터 서방 식민주의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 나왔다. 19세기 전반 제국주의로 바뀐 산업 자본주의는 뒤떨어진 넓은 아시아를 힘센 배와 총 칼로 정복하고 할양, 배상, 개항, 식민지화를 강요해서 넓은 동방을 세계근대사의 무대로 억지로 끌어냈다. 1840년의 아편전쟁은 중국을 반식민지로 떨어뜨렸고 1895년 대만은 최초의 식민지로 떨어져 버렸다. 1910년에는 한국도 일제의 식민지로 변해 버렸다.

식민지화 과정은 폭력, 억압, 약탈, 굴욕에 가득 차 있었다.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서는 우선 가난한 농민들의 전근대적이기는 하나, 간고하고 격렬한 무장저항이 있었으며, 이어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기나긴 민족해방투쟁이 펼쳐져 갔다. 1931년에 이르러서, 일제는 중국과 아시아를 겨냥하고 야욕에 찬 15년 전쟁을 시작 하였다. 중국, 한국, 월남, 동남아의 여러 민족은 서로 호응하며 반파시즘 전쟁의 전열에 들어서고 민족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을 펼쳐 나갔다.

아시아 여러 곳의 민족, 민주운동은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매서운 시련을 받아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마침내 1945년에 전면적인 승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억압받았던 참된 해방, 평화, 독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대전후 곧 벌어진 중국 내전에서 미국은 부페한 국민당정부를 군사, 경제 양면에서 지원하여 중국민중의 신민주주의 혁명운동에 맞섰다. 한국에서 미국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고 한국 민중의 통일운동을 진압하였고 6.25전쟁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구조를 더욱 더 굳어지게 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신식민지가 되었다. 인도지나 반도에서는 월남민중이 디엔비엔푸 싸움에서 구식민지를 회복하려는 프랑스의 의도를 깨뜨렸지만 오히려 더 악랄한 제국주의 미국을 맞아들이게 되어 월남민족해방투쟁은 더욱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미소냉전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을 거쳐 굳어진 세계냉전체제는 중국의 혜협 양안이나 남북한 쌍방에게 민족이 분열하고 가족이 헤어지고, 겨레가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맛보게 했다.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백방으로 지원을 하고 반공과 국가안전보장을 대의명분으로 삼는 수많은 군사독재정권을 키워내고, 지켜 주었다. 미국은 여러 민족해방투쟁과 민족민주혁명의 인맥, 조직, 철학, 가치관 등의 전통과 체계에 대하여 잔혹하고 철저한 탄압을 자행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인 규모의 조직적인 국가테러리즘을 저질러 나갔다. 여러 민족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민족해방의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 파괴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그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세계자본주의 나라들의 환호성 속에서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갑자기 무너졌다. 여러 가지 흄을 지닌 미국 하나만이 폐권을 누리는 세계가 생겨났다. 냉전시대의 양극구조는 소련이 물려 남으로써 무너지고 오직 미국의 비웃음과 떠벌림만이 남았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 '자본주의' '민주' '자유주의'는 드디어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고. 이 자본주의, 민주, 자유의 최종승리를 부르짖는 소리는 이미 매우 유력한 이데올로기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주의 큰 나라의 학개, 대중매체, 정치꾼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속이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1) 이른바 민주, 자유, 인권, 의회정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은 널리 인정된 가치로 실증되었다고 하는 선전은, 그 구호 아래서 오랫동안 저질러 온 부패, 차별, 부정, 오만불손을 숨기고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지해온 반공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이루 말할수 없는 반민주, 반인권의 어마어마한 죄를 숨기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분단하여 그 분단구조 위에서 국가폭력과 테러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해온 사실을 숨기고 있다.

2) '사기업' '자유경제' '자유시장과 무역'의 이름과 실천의 덕으로 '네마리 용'의 기적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 졌다는 선전은 미국이 지지해 온 '개발독재'의 국가폭력을 숨기고 있다. 그것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게 억압 해 왔다. 게다가 그러한 선전은 미·일의 자본, 기술,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아시아 여러 곳의 정치, 경제, 학술, 이데올로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구조적인 부패, 빈부격차 환경과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온 사실을 은폐해 왔다. 한술 더 떠서 '독재정치 아래에서의 경제 성장'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여,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아름답게 꾸미기에 이르렀다.

3) 학술교류나 유학생정책을 통하여 키워진 세계 여러 곳의 미국화 되어 서양화된 엘리트는 반공,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있다. 그것은 아시아 여러 곳의 민족해방투쟁 역사와 그 정통성, 정당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유퇴하게 하고, 지워버리고, 숨기고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아시아의 민족해방투쟁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국주의 압박에 반대하며 궁극적인 인간해방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것이다. 그들이 혈뜯고 속이는 힘은 무서운 것이어서, 마침내 그들에게 해를 입은 아시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잘못하고 못난 양으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의 민족해방투쟁역사와 가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의 의식과 사상이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의식의 뒤틀림에 까지 이른다.

4) 세계신질서론(세계화)을 가지고 포스트 냉전시대의 '민주' '자유' '번영'의 보편화의 환상을 만들어 내고 미국 하나만의 패권 즉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숨기고 무역, 기본기술, 지적 소유권, 인권, 민주정치를 구실이나 수단으로 삼아 남의 나라 내정에 부당하게 끼어들어 자신의 의지와 가치를 밀어부쳐, 온갖 꾀를 써서 중국과 한반도의 민족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5) 특히 최근에 이르러 서방과 일본은 의식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민주' '보통선거'의 의의와 가치를 과대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 의도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반세기동안 지배한 구조적 합리성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과대선전은 시시비비를 없게 하고, 아시아가 현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부패를 숨기려는 것이며, 청산하지 못한 폭력과 공포를 슬그머니 화해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일제국주의가 계속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나아가(중국과 대만)해협·양안과 한반도의 남북 분열을 고정화 시키려는 의도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기 위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찾아내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사람에게 으뜸의 가치를 구하는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아시아 근대 100년의 식민지와 해방,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아시아 100년사와 해방50년사에서 이루어져 온 민중의 가치와 사상의 원점에 돌아서서 해방후 50년의 냉전과 내전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존재해 왔던 아시아 반공국가의 보안법 체계, 국가폭력장치와 테러기구와 그 영향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붕괴나 '포스트 냉전시대'의 도래를 쉽게 인정하고 순진하게 기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아시아나 세계의 피압박 민족이나 민중들이 압박에 저항하고, 사람과 민족해방을 위해 지불해온 어마어마한 희생을 비웃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군사 독재

정권과 독재자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1947년 미국의 묵인 아래 국민당 군대는 민주화와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민중에게 피바린내 나는 탄압을 가하고 2만명 가까운 사람들을 살해했다. 6.25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 7함대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국민당이 대대적으로 민중을 테러 학살하는 것을 도왔다. 즉 공 산당원 숙청 명목으로 4000명을 사형하고 1만명 가량을 투옥했으며 비밀, 불법체포, 고문, 양 터리 재판, 사형집행의 백색테러 폭풍이 휘몰아 쳤다. 이러한 철저한 테러독재 아래서 대만은 외국자본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80년대 이후는 '대만화' '대만아이덴티티'의 이름으로 반공, 반중국, 반통일, 반민족해방의 '대만독립주의자들이 역사부정이나 의식의 전도형상에 박차를 가하고 세를 모으고 있다. 2차세계대전후 대만은 분명히 냉전과 내전구조 속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지역의 하나이며 민족, 계급,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몰려 있는 곳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중의 힘으로 침된 냉전 종결을 이루어 내야 하며 거기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운동권의 벗들과 더불어 1997년 2월에 타이페이에서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의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東亞冷戰與國家恐怖主義] 第1次國際討論會(臺北) 秘書處
秘書長 陳映真 (1996년 5월 제1차 초안)

96년 7월 31일자

국제심포지엄에의 찬동을 구하는 호소문

근계

인사말

이제 동봉한 것처럼 1997년 2월 말부터 3월초에 걸쳐 대북에서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개최를 호소하는 취지서를 대북에서 보내왔다 (프로그램은 아직 초안단계다)

이 기획은 1995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제심포지엄에서 수난 34년 지난 대만의 전 정치수 임서양 씨가 재일 조선인 전 정치수 서승 씨의 증개를 통해서 초치되어 한국의 수난자와 함께 증언을 하는 공동 활동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이해나 현재 위치지워지거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하고 우리 사이에도 충분한 공통의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회피하는 일반적인 풍조 속에서 우리들은 감추어진 역사, 빠뜨려진 문제, 미해결의 과제가 꽤 많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은 아시아에의 침략을 통해서 자국의 근대화를 강행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국민당정권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독재정권과의 거래를 통해서 전쟁책임의 추궁을 면하고 조선전쟁에 의해 부흥특수에 빠져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자본진출에 의해 개발독재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아시아 민중의 희생 위에서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해왔다. 더 나아가 전후보상의 불이행, 자위대의 해외파병, 일미안본체제의 실질적 강화를 통해서 일본은 지금 아시아 민중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들은 역사와 현재 속에서 아시아 속에서 이러한 일본의 위치를 생각해보면서 대만사무국에서의 호소문,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한국사무국의 자세에 대해 일본에 생활의 기반을 둔 우리들의 입장에서 호응하여 국제 심포지엄의 성공에 노력하고자 한다.

대만은 내전 2.28사건의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때를 맞춰 우리들은 대만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사람들과 같이 냉전으로 희생된 민중을 마음에 새기고 동아시아 새 역사를 전망하기 위해 대만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진심으로 지원을 보낸다.

이 취지를 이해하고 찬동인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

8월 24일자 편지

1) 기일에 관해서. 당초 2월 28~3월 3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만 한국쪽에서 신학기가 3월 1일 시작이므로 일찍하자는 전의가 있고 대만 사무국도 그것을 수용하여 2월 21일(금)~24일(월)로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학년말과 입시 관계로 바쁜 시기이나 한국의 사정에 대해 양해해주길 바랍니다.

2) 심포지엄 전체 일정에 관해서(아직 조정중)

2/21 희생자에 대한 추도회

2/22 오전.오후 심포지엄

밤 역사의 증언--대만 한국 오키나와에서(오키나와의 증언은 川滿信一 예정)

2/23 오전 오후 심포지엄

밤 냉전체제하의 문화에 대한 좌담회

(일본, 오키나와의 발언은 日高六郎, 高良勉 예정)

2/24 대북 주변의 현지 현장 연구

듀모는 일본에서 40~50인, 한국에서 50인, 대만에서 80~100인 예상.

3) 심포지엄 관계 대만 및 한국측 보고자. 보고 제목은 아직 미정임

가. 대만측 보고자 8명: 陳明忠 紀欣 曾健民 王曉波 杜繼平 劉進慶 郭承敏 陳玉?

나. 한국측 보고자 4명: 강만길 박원순 서중석 미정--법학관계

4) 일본측 보고에 관해서

井上清, 동아시아에서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의 현대사적 의의

水野直樹, 인권과 국가폭력장치--일제통치하의 치안유지법체계의 전후 계승

林哲, 냉전하 아시아의 국제관계

田村紀之, 냉전하 아시아의 개발독재

미정, 오키나와에서 본 냉전의 희생자들

또한 위에 열거한 보고제목은 대만사무국에서 구한 것으로 대체로 일방적, 잠정적으로
붙인 것임. 보고자들은 이 취지를 살려 적당히 변경해도 됩니다.

5) 심포지엄의 구성과 각자의 보고시간 등. 현재 3국 사무국이 각 보고자에게 제목 결정을 청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집약된 다음에 대만 사무국에서 그룹핑을 하고 보고의 순서 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각 보고 시간은 약 20분이고 그 뒤 약정 토론자가 약 10분의 코멘트를 합니다. 오전, 오후 각각 4~5개의 보고 코멘트가 있은 후 단상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동시통역체제(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취하고 가능한 한 토론의 밀도를 마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본어 발표도 가능합니다.

6) 일본어 논문 제출에 관해서. 분량에 대해서 아직 통일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고시간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초고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별개로 A4 크기로 2페이지 정도의 요약을 바랍니다. 전 논문이 일 중 한 3국어로 번역되

어 회의장에서 배포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사무국 역량으로는 어려워 요약 번역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바람입니다.

7) 이상의 안은 잠정적인 것인데 9월 15일에 서울에서 코디네이터 서승씨, 한국사무국, 대만사무국 멤버가 모여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8) 일본사무국으로서는 이 심포지엄의 성공을 위해 10월, 11월, 12월, 1월 한 달에 한번씩으로 학습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학습회에서는 가능하면 정상, 수야, 임, 전촌 선생 순서로 초청하고 심포 보고에 관련된 발표를 하고자 하고 40인 규모로 충실히 토론의 장을 갖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어려우시겠지만 연구학습의 장에 참석해 주십시오.

1997년 봄 대만국제심포지엄 찬동 호소인 승낙자 일람

新崎盛暉(충승대학교수)	岡部伊都子(수필가)
内海愛子(혜천학원 대학교원)	田中伸尚(논픽션 작가)
宇井 純(충승대학 교수)	末川 清(임명관대학 교수)
劉進慶(속경경제대학 교수)	新美 隆(변호사)
水野直樹(경도대학 조교수)	井上 清(일본역사 연구)
康宗憲(한국문제연구소 소장)	淺井基文(대학교원)
丹羽雅雄(변호사)	佐高 信(평론가)
飯沼二郎(경도대학 명예교수)	空野佳弘(변호사)
高二三(신간사)	飛田雄一(신호학생 청년센터 관장)
中北龍太郎(변호사)	松澤哲成(교원)
中井太郎(카운셀러)	戶次公正(진종대곡파 승려)
金時鐘(신인)	武子小路公秀(명치학원대학 교수)
小田成光(변호사)	土方 鐵(작가)
曹智鉉(사진작가)	市川正昭(대판부퇴직교직원 연락협의회 사무국장)
高良 勉(시인)	日高六郎(평론가)
藤本 治(청강대학 명예교수)	新屋英子(배우)
米倉齊加年(배우)	安齋育郎(임명관대학 교수)
合田 悟(교회 목사)	田村紀之(동경도립대학 교수)
辛基秀(청구문화홀 관장)	金城 實(조각가)
田代 實(의사)	金石範(작가)
鄭敬模(평론가)	徐勝(임명관대학 강사)
藤目ゆき(대판외국어대학 조교수)	文京洙(임명관대학 조교수)
杉原 達(대판대학 조교수)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現代史的 背景

姜萬吉

1.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背景

解放後 美軍政時期에 形成되어 李承晚政權期 · 朴正熙政權期를 通해 強化된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根源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支配期에서 찾아져야 한다. 帝國主義 日本이 中世時代까지는 오히려 先進文化의 傳受地域이었던 韓半島를 强制占領하여 植民支配하게 되었을 때 國家테러리즘의 強壓方法을 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은 韓半島를 强占한 初期부터 義兵鬪爭과 愛國啓蒙運動 등을 彈壓하고 植民統治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흔히 武斷統治라 부르는 國家테러리즘을 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國家테러리즘의 支配는 곧 3 · 1運動의 原因이 되었다.

3 · 1運動 以後의 1920年代에는 民族主義運動이 持續되는 한편 社會主義思想이 들어오고 그 運動이 民族解放運動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植民地 支配權力의 彈壓 對象이 더 擴大되었으며, 특히 社會主義運動이 蘇聯 및 코민테른과 連結되어 있어서 植民地 支配權力의 그것에 대한 警戒와 彈壓은 계속 強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 1運動後 日本帝國主義는 所謂 文化政治를 標榜했으나 實際는 亦是 國家테러리즘의 策動에 의한 民族分裂政策일 뿐이었다.

1930年代 以後 帝國主義 日本이 中國大陸 侵略에 나서면서 그 植民地 朝鮮에 대한 國家테러리즘의 支配는 한층 더 强化되어 갔다. 팟시體制로 변한 日本의 國家테러리즘은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으로 확대된 朝鮮人們의 民族解放運動을 沮止하는 데 狂奔하는 한편, 侵略戰爭의 擴大로 人的 · 物的 窮乏狀態에 빠진 日本은 朝鮮青年들을 侵略戰爭에 動員하거나 全體 朝鮮의 人的 · 物的 資產을 戰爭 資源으로 充當하는 데 國家테러리즘을十分 適用했다.

1930年代 以後의 侵略戰爭時期에는 특히 朝鮮人们的 社會主義運動이 끈질기게繼續되면서 植民支配體制를 戮脅했다. 日本의 國家테러리즘은 그 白色테러의 性格을 強化하여 1936년에는 도이취와 코민테른 活動에 대한 共同對應과 蘇聯에 대한 共同牽制를 目的으로 하는 反共協定을 締結했다. 이후 일본 팟시즘과 그 植民地 國家權力의 朝鮮社會主義運動에 대한 彈壓은 참으로 奇酷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彈壓에 動員된 下手人們의 大部分은 長期間의 植民支配期間을 通해 統治權力이 計劃的으로 養成한 警察과 軍隊 系統의 朝鮮人 下級 搜查官들이었다. 朝鮮의 解放이 完全 自力으로 또 革命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들 植民地 國家테러리즘의 下手人们은 當然히 肅清되어야 할 存在였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韓半島의 解放은 美蘇兩軍의 38度線을 境界로 한 分割占領으로 오게되었다. 38度線 以北 蘇聯 占領地域에서는 植民地時代에 民族主義勢力 및 社會主義勢力を 彈壓한 附日勢力에 대해 強力한 肅清을 가했기 때문에 그곳의 많은 附日勢力이 以南으로 移住하게 되었다. 그러나 38度線 以南 地域을 占領하여 軍政을 實施한 美國은 그곳에 優勢한 左翼勢力を 統制하고 親美資本主義國家를樹立하기 위해 38度線 以北에서 越南海 온 過去 附日勢力의相當한 部分을 오히려 民族主義勢力 및 社會主義勢力を 彈壓하는 데 利用했다.

韓半島地域에서의 國家테러리즘은 1910年代에는 帝國主義 日本이 朝鮮의 民族主義運動을 彈壓하기 위해 成立되었고 1920年代 以後에는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으로 형성된 民族解放運動을 彈壓하는 役割을 다했으며, 1930年代에는 한편으로 朝鮮의 人力과 物力を 侵略戰爭 資源으로 動員하는 데 利用되었다. 그리고 日本 帝國主義가 敗亡한 後에도 美軍政에 의해 如前히 韓國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を 彈壓하고 附日勢力 中心의 親美資本主義國家를樹立하는 役割을 다했다는 점에 그 反歷史的 特徵이 있다.

2.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役割

日帝强占時期에 根源을 두고 있는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解放後의 時代的 狀況에 따라 그 役割이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解放과 함께 實施된 1940年代 後半期 美軍政時期의 韓國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日帝强占時代 國家테러리즘을 그대로 이어받아 反共主義를 標榜하면서 民族解放運動에 參與했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의 政權參與를 封鎖하는 役割을 다했다. 美軍政은 國內의 左右翼統一戰線에 의해 成立된 朝鮮人民共和國을 承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海外에서 돌아 온 民族主義勢力 中心의 大韓民國臨時政府도 承認하지 않고 國내의 地主勢力 및 附日勢力を 중심으로 組織된 軍政을 實施했다.

美軍政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 民族統一國家가 아닌 分斷國家를 성립시키는 役割을 다했다. 解放後의 韓國 政界에서는 國내에서 活動했던 社會主義勢力과 主로 海外의 民族解放運動戰線에서 돌아 온 民族主義勢力 사이에 統一戰線 結成을 통한 統一民族國家를樹立하려는 運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美軍政은 反共主義에 基礎하여 社會主義勢力を 積極的으로 彈壓하는 한편, 1947年的 '트루만 독트린' 以後 韓半島問題를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에 따라 解決하기로 했던 蘇聯과의 約束을 어기고 蘇聯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半島問題를 UN으로 移管함으로써 結局 南韓만의 單獨選舉를 먼저 實施하여 分斷國家가 成立되게 했다.

]1948年에 成立되어 1950年代의 韓國을 統治한 李承晚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日帝强占時期와 美軍政時期 國家테러리즘의 路線을 繼承하여 그 보다 한층 더 強力한 極右反共主義와 反北韓主義를樹立하는 役割을 다했다. 李承晚政權이 成立되기 以前까지만해도 南韓社會에도 左翼勢力이 어느 程度 存續했고, 所謂 中間派로 불린 民族主義勢力이相當數 남아 있었다. 그리고 北韓政權 및 그 住民에 대한 敵對意識도 아직은 成立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李承晚政權이 極右勢力 中心의 強力한 反共主義 政策을 편 結果 左翼勢力を 말할 것도 없고 中間派로 불린 民族主義勢力까지 徹底하게 肅清되어 갔다. 例를 들면 民族解放運動戰線에서의 代表的 民族主義者 金九가 北韓政權과의 妥協에 의한 統一民族國家樹立路線을 堅持한 理由로 暗殺되었다. 以後 6·25戰爭를 거치면서 平和統一論은 利敵論으로 看做되었고 反共主義·反北韓主義가 加一層 強化되면서 이 反共主義가 民族主義로 紛飾되어 갔다.

李承晚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로 日帝强占時代의 附日勢力에게 免罪符를 주는 役割을 했다. 35年間 日本 帝國主義의 强占에서 解放된 韓國社會에 처음으로 成立된 政權은 民族解放運動勢力이 擔當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그 政權이 當面한 重要한 歷史的 課題中의 하나는 日帝强占時代의 附日勢力を 徹底히 肅清하여 民族的 主體性을 確立하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 民族解放運動勢力은 左右翼을 莫論하고 附日勢力 肃清問題에 意見이 一致되어 있었다.

그러나 美軍政에 뒤이어 附日勢力を 基盤으로 成立된 李承晚政權은 議會가 制定한 附日勢力 肃清法, 즉 反民族行爲者處罰法을 廢棄하다시피 함으로서 以後 韓國社會의 政治·經濟·軍事 등 各 部門에 日帝强占時代의 附日勢力이 溫存하게 했다. 그 때문에 4·19民衆抗爭에 의해 李承晚政權이 무너진 後에도 附日勢力 中心의 張勉政權이 成立될 수밖에 없었고, 張勉政權이 實施한 若干의 民主主義的措處에 不安을 느낀 朴正熙를 中心으로 하는 附日軍部勢力이 軍事政變을 일으켜 國家테러리즘을 다시 強化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했다.

反共를 國是로 하여 일으킨 政變에 '成功'함으로서 1960年代와 70年代의 韓國을 統治한 朴正熙政權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中央情報部를 設置하여 可謂 恐怖政治를 피하면서 한층 더 強化된 極右反共主義·反北韓主義를 基盤으로 한 '軍事文化'를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各 部門에 고루 扶植시키므로서 韓國社會 全般에 反民主主義의 毒素가 깊이 着根하게 했다. 朴正熙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에 의해 定着되기 시작한 '軍事文化'의 毒素는 以後 全斗煥政權·盧泰愚政權으로 이어지면서 蔓延되어 갔고, 文民政權 아래에서도 그 毒素가 쉽게 解消되지 않고 있다.

- 朴正熙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로 1965年에 大多數 國民의 激甚한 反對를 軍事力으로 彈壓하면서 美國의 強力한 '要求'에 의해 韓日協定 締結을 强行함으로서 太平洋戰爭 敗北로 물러났던 日本으로 하여금 特히 經濟的으로 韓半島에 再上陸하게 했다. 또 한편, 韓日協定 締結로 東아시아에서 韓·美·日 3角構圖가 堅固하게 形成되어 1960年代 以後 中·蘇 紛爭으로 孤立되어 간 北韓에게 強力한

威脅을 줌으로서 韓半島에서의 冷戰體制가 尖銳化하게 했다. 그것은 世界史에서 冷戰體制가 瓦解되어 간 1980年代 後半期 以後의 狀況에서도 韓半島地域의 冷戰體制만은 尚存하는 結果를 가져 왔다.

3.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

어느 國家社會를 莫論하고 國家테러리즘이 反歷史的 役割을 다하게 마련이지만, 植民地時代와 民族分斷의 時代를 겪은 韓國社會의 境遇 그것이 주는 弊害는 深刻한 것이었다.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무엇보다도 民族分斷의 主原因이 되었다는 占에서 그 反歷史性을 克明하게 들어내고 있다.

韓國에서의 國家테러리즘은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日帝强占時代의 國家權力에 의해 民族解放運動을 彈壓하기 위해 처음 成立되었다. 따라서 그것이 彈壓한 主對象은 當然히 民族解放運動을 主導한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이었다. 이들 두 势力은 日帝强占時代의 民族解放運動을 主導하는 過程에서 解放後 單一 民族國家를 建設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民族解放運動 全體 過程을 통해 統一戰線運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韓國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은 解放後의 民族國家 建設過程에서도 그 目的을 統一民族國家의 建設에 두었고, 그 때문에 日帝强占時代 民族解放運動過程에서의 統一戰線運動은 解放直後에도 繼續되었다. 그러나 日帝强占時代 國家테러리즘의 下手人이었던 附日勢力を 再登用하고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에 대한 彈壓政策을 그대로 繼承한 美軍政時期 韩國의 國家테러리즘은 統一民族國家樹立運動으로서의 統一戰線運動을 파괴했다. 그리고 附日勢力を 基盤으로 하는 反民族主義·反社會主義의 分斷國家를 成立시켰다. 美軍政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이 分斷國家 成立의 基礎를 마련했다는 占에서 그 反歷史性이 集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當然한 말이지만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은 둘째, 그 性格과 志向이 反民族·反民主·反民衆의이라는 점에 있다. 日帝强占時代와 美軍政時期는 말할 것도 없고 李承晚文民政權은 警察을 포함한 그 行政官僚의 大部分과 司法界와 軍事要職의 大部分이 反民族勢力으로 構成되었고, 朴正熙軍事政權은 그 위에 權力 核心部의 大部分이 舊日本軍 내지 僞滿軍 出身 등의 反民族勢力으로 채워져 있었다.

國家테러리즘이 造成한 政權이 反民主主義의 獨裁政權이 될 수밖에 없음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겠으나, 그 支配權力의 核心이 日本人이건 美國人이건 韓國人이건, 그리고 文民이건 軍人이건 相關없이 모두 民衆의 支持를 缺한 狹隘한 極右反共勢力 中心의 獨裁政權이었다는 점에 一致했다. 韩國의 國家테러리즘은 그 政策路線이 反社會主義·反共主義이기만 하면, 또 그것을 標榜하기만 하면 一貫되게 維持될 수 있었다는 占에 그 特徵이 있었던 것이다.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은 세 번째로 特히 反民族勢力を 民族勢力으로 紛飾하는 占에 있었다. 植民地時代와 民族分斷時代를 겪은 韩國社會의 境遇 附日勢力과 分斷策動勢力이 反民族勢力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反共主義를 指向하는 한 國家테러리즘에 의해 民族主義勢力인 것처럼 紛飾되기 마련이었다. 日帝强占時代와 解放後의 美軍政時期, 李承晚政權期, 朴正熙政權期를 통해 反民族勢力이 肖清을 避해 統治權力의 核心部에 接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國家테러리즘이 가진 反歷史性 때문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韩國의 現代史를 歪曲시킨 核心的 要因이었다.

徐仲錫

1.

1945年 8月 日帝로부터 解放되었을 때, 民族國家를 建設하기 為하여 解放된 그날부터 右翼과 左翼이 聯合하여 建國準備委員會를 構成하여 活動하였으며, 그 뒤에도 左右合作, 南北協商운동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南과 北에서 自身의 體制를 굳히며 極右와 共產主義者들을 保護, 育成하였던 美·蘇가 冷戰으로 들어감으로써 韓國은 分斷되었다. 冷戰 때문에 韓國 歷史上 처음으로 맞은 分斷은 單純히 1千餘年間 살아온 國土의 兩斷을 넘어서서, 民族의 分裂을 深化시켰다. 冷戰이데올로기에 依한 民族 分裂의 深化와, 北緯 38度線이 南과 北의 分斷線임과 同時に 美·蘇 冷戰의 對峙線이 된 것은, 必然的으로 韓半島에서 內戰이자 國際戰의 性格을 갖는 戰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은 國家테러의 激化와 함께 同族相殘의 慘禍를 蒼起하게 되었다.

冷戰에 의한 分斷은 또한 南에서 長期에 걸쳐 極右 獨裁權力を 維持할 수 있게 하였다. 그 極右獨裁權力은 直接的으로는 美國에 의하여 訂받침된 것이었지만, 그것의 土臺와 性格은 日帝에 의해 形成되었다. 그것은 日本 軍國主義 파시즘에 의해 育成되거나 그것의 影響 아래 成長하였고, 日本帝國主義에 服務한 親日派들에 의하여 떠받쳐졌다. 이러한 韓國의 極右獨裁政權은 美國의 支援을 받으며 分斷과 冷戰이데올로기를 最大限 活用하여 極右反共獨裁體制를 強化시켰다.

韓國의 極右反共政權 極右反共體制는 그것의 成立에서부터 美國의 東亞細亞 및 韓半島 冷戰政策의 產物이라는 面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韓國에서의 開發獨裁의 性格에 規定의 作用하였다.

美國은 韓國 極右反共體制의 物的, 人的 土臺를 提供하였고, 마련하였다. 그것의 一環으로 韓國에 어떠한 政權이 들어서든 反共만 徹底히 잘하면 그 政權을 支持하고 支援하였다.

1948년에 들어선 李承晚政權은 警察國家로 惡名이 높았다. 李政權을 支撐해준 警察의 幹部들은 大多數가 日帝에 服務한 反民族行爲者였는데, 그들을 美軍政이 引繼받아 統治의 基幹으로 活用하였던 바, 李承晚의 獨裁와 테러는 이것에 크게 依存했다. 3萬名 內外의 犠牲者를 낸 濟州 4·3抗爭에도, 麗順事件의 處理에도 美國은 干與하였다. 韓國戰爭의 涼中에서 李承晚이 永久執權을 劇策하여 蒼起된 釜山政治波動의 結果物로 나온 拔萃改憲도 美國의 支援속에 이루어졌다. 그뒤 李承晚이 白色獨裁를 強化하기 위하여 進步黨 幹부들을 投獄하고, 進步黨首 曹奉岩을 死刑에 處했을 때에도, 保守野黨과 言論을 彫壓하기 위한 國家保安法 改正案 通過强行으로 發生한 24波動에도 美國은 傍觀하였다. 심지어 1960年 3月 15日에 저질러진 正·副統領 不正選舉에 대하여도 美國은沈默을 지키다가 學生·民衆의 抗爭으로 李承晚獨裁政權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때에야 美國은 李承晚支持를 撤回하였다.

1960年 3·15不正選舉에 대한 3, 4月 抗爭으로 李承晚政權이 崩壞되어 成立한 張勉政府는 不運한 權力이었다. 政府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制限된範圍에서나마 自由民主主義가 지켜졌는데, 美國은 4月 革命運動時期 民族主義者나 進步勢力의 南北統一運動이나 自主化運動을 警戒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反共法 데모防止法 등의 制定으로 制動을 걸려던 張勉政府의 努力은 失敗에 돌아갔던 바, 李承晚이나 朴正熙 못지 않게, 外形으로는 그보다 더욱 親美的이었던 張勉政府는 美國의 不信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1961년 5·16軍部쿠데타로 張勉政府는 무너지고, 이후 30년 동안 韓國은 軍部의 統治를 받게 되었다. 朴正熙軍部政權이 反共과 함께 焦眉의 課題로 重視한 것은 韓·日 國交正常化였다. 正統性의 脆弱함을 經濟成長으로 메꾸려는 意圖 때문이었다. 日本 또한 釜山에 赤旗가 펼려이는 것을 願치 않았고 韓國에 進出할 必要가 있었다. 美國은 李承晚政府한테도 韓日關係의 改善을 要求하였지만, 1960年 日本과 新安保條約을 맺은 후에는 더욱 強力히 美·日·韓의 垂直的 保安體制를 強化하여 中國에 對應하고 베트남戰에 對備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을 軍事的, 經濟的으로 強化하여 反共體制를 굳건히 할 必要가 있어, 韓日協定의 締結을 強力히 促求하였다.

日帝末 日本關東軍 下級將校였던 朴正熙는 거센 韓日會談反對鬭爭을 戒嚴令·衛戍令 등을 通하여

抑壓하고 韓日協定을 締結하였으며, 베트남에 2個師團 以上의 戰鬪兵을 派遣하였다. 韓日協定 締結과 베트남派兵으로 美國과 日本의 強力한 支援속에 韓國의 反共體制는 軍事的, 經濟的 傷害를 받으며 強化되었고, 그와 함께 南과 北의 緊張과 對立·對決이 招來되었다. 朴正熙는 이러한 經濟的, 軍事的 強化와 南北對立을 日帝時期 軍國主義 과시즘을 聯想시키는 形態로 自身의 權力を 強化하는데 活用하였다. 美·日의 支援 아래 1969年 3選改憲을 斷行하였으며, 1972年에는 維新體制를 出帆시켰다.

1979년 釜馬抗爭이 直接的인 導火線이 되어 維新體制는 崩壞하였으나, 民主化의 輿望이 담겼던 '서울의 봄'은 美國의 支援을 받는 新軍部의 軍靴발에 짓밟혔다. 12·12쿠데타에 이어 美國의 支援 또는 諒解하에 1980년 5·17쿠데타로 新軍部가 權力を 掌握하는 過程에서 光州民主抗爭이 일어났고, 新軍部는 美國의 둑인 아래 그것에 慘酷한 虐殺로 對應하였다. 새로 出帆한 全斗煥政權은 레이건 美國政府와 中曾根 日本政府의 強力한 支援 아래 維新統治에 벼금가는 軍部 暴壓統治를 慢行하였다.

2.

韓國에서의 獨裁는 冷戰의 一環으로서 展開된 美國의 對韓政策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獨裁는 歷代 政權의 極右反共政策과 結合되어 펼쳐졌다. 獨裁는 冷戰이데올로기 反共이데올로기 위에 構築되었다. 獨裁의 強化와 反共의 強化는 大體로 一致하여 나타났다.

極右的 反共體制는 韓國戰爭 以前에 濟州 4·3抗爭에서의 虐殺 등과 같은 테러에 의하여 基盤이 잡혀갔고, 韓國戰爭의 廢墟위에서 豊固해졌다. 그와 함께 南勞黨 등 共產主義者들의 冒險主義도 反共體制와 李承晚獨裁政權 構築에 一助를 하였다.

1948年 12月에 公布된 國家保安法을 한 研究者は 分斷의 法制화로 規定하였지만, 그것은 反共體制와 獨裁體制를 構築하는데 強力한 武器로 歷代 獨裁政權에 의하여 활용되었다. 國家保安法은 左翼만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右派 民族主義者나 自由民主主義者들도 拘束하였으며, 같은 極右反共主義者들까지도 그것으로 威脅하고 얹어했다.

李承晚政權은 1950年代 내내 學生들과 市民, 職場人們을 動員하여 滅共 北進統一 肇起大會와 示威를 가졌다. 北進統一運動은 滅共統一의 口號 아래 어떠한 北과의 交流나 平和的 共存, 平和統一의 模索을 단호히 反對하여, 分斷의 固着을 誘導하고, 黑白論理로 中道穩健勢力を 隔離시키면서, 極右反共의 領導者한테 모든 權力이 集中되도록 한 大衆動員體制였다.

5·16쿠데타로 執權한 朴正熙와 軍部는 警察과 大衆動員에 주로 依存한 反共體制가 4月革命으로 해 이해진 것을 再整備, 強化하였다. 革新勢力과 進步的 青年 學生들을 大量으로 逮捕하였고 國家保安法을 더욱 나쁜 形態로 改正하였으며, 反共法을 制定하였다. 그러나 朴正熙 反共獨裁의 真髓는 '情報政治'에 있었고, 情報政治는 中央情報部의 一元의 指揮 아래에서 전개되었다. 進步勢力은 恒時의 으로 監視와 抑壓 아래 놓여 있었고, 野黨은 '사쿠라 野黨'이 意味하듯 分裂工作의 對象이었다. 言論의 목도 1960年代 後半에 갈 수록 조여졌다. 與黨과 政府 關係者들도 언제나 中央情報部의 監視 아래 있었다.

反共主義는 維新體制에서 極端의 小形態로 示顯되었다. 朴正熙는 낙순의 中國 訪問으로 因한 冷戰體制의 弛緩에 對備하기 위하여 維新體制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못했다. 그 대신 1972년 7월 7·4共同聲明으로 統一希求가 澄湃해졌던 바, 統一에 對備하기 為해서는 權力を 1人の 領導者에게 集中시켜 異見을 없애고 國力を 極大化하여야 한다는 점을 維新 쿠데타를 일으킨 理由로 내세웠다. 1971年の選舉에서 嶺湖南 地域感情을 誘發하여 大統領에當選된 朴正熙는 이번에는 民族의 統一念願을 惡用하여 維新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미 維新 宣布 以前에 在日僑胞 留學生 徐勝은 間諜으로 中央情報部에 끌려갔지만, 1974年을 前後로 하여 母國에 공부하러 온 在日僑胞 留學生들을 대거 간첩으로 투옥하였다. 또 이 시기에 監房에서는 思想犯에 對한 無慈悲한 轉向工作이 分斷後 가장 심하게 推進되었다. 1975年에는 社會安全法이 만들어져, 國家保安法, 反共法 抵觸者들이 다시 投獄되거나 直接의 監視의 對象이 되었다. 民青學聯·人革黨 事件으로 數百名이 投獄되고, 人革黨關係者로 逮捕된 8명이 教授형에 처해졌다.

모든 初中高等學校의 教室, 複道의 벽은 한결같이 共產黨의 蠻行을 告發하는 포스터와 標語로 塗꾸

어졌다. 이 섬뜩한 그림들을 아이들이 보면, 北의 住民은 같은 民族이라고 생각되기는 커녕 가까이 하기가 무서운 異物質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反人間의 極端的인 反共主義가 維新體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勤員되었다. 1970年代 内外 朴政權은 北이 당장에 南侵할 것처럼 宣傳하였다.

3.

一部 學者나 리포터들은 韓國이 開發獨裁 때문에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했다고 說明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韓國의 政治는 時期에 따라 程度나 方法에 差異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冷戰體制가 極端的으로 適用된 反共獨裁였다. 韓國人은 極右反共體制下에서 數十年間 民主主義 民族主義活動이 極度로 抑壓받고, 人權이 無慘히 繆謫당했다.

韓國에는 開發獨裁가 없었는가. 李承晚 政權은 經濟의 安定을 力說하였고, 1957年頃부터는 經濟가 好轉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것에 于先하여 經濟發展에 重要性을 부여한 것은 張勉政府였다. 張勉政府는 出帆할 때부터 經濟第一主義를 標榜하였고, 國土開發事業을 벌이며 經濟開發5個年計劃을樹立하였다. 朴正熙政權 또한 反共과 함께 經濟發展을 自身의 目標로 내세웠다.

朴正熙政權은 軍政期, 民政期, 維新期의 세 時期로 區分해볼 수 있다. 韓國人們은 民政期(1963-1972)에도 中央情報部 등 權力의 統制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 時期는一般的으로 獨裁政治期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維新體制擁護論者들은 1930年代의 日帝 軍國主義者처럼 最大의 效率性을 至高의 目標로 내세웠다. 따라서 韓國에서 開發獨裁를 云謂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維新期와 1980年代 初中盤에 있었던 新軍部統治期가 該當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開發獨裁를 肯定的으로 보는 자들은 新軍部統治期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하여 言及하기를 꺼리는 傾向이 있다. 뿐만 아니라 開發獨裁論者들은 維新體制를 開發獨裁體制로 곧장 舉名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아마 維新體制를 공공연히擁護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新軍部時期에 開發獨裁 때문에 經濟가 發展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韓國에서 開發獨裁라는 用語를 애매하게 使用하는 것으로 보인다.

開發獨裁는 實在인가 神話인가. 이 問題와 關聯해서 두 가지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經濟成長이 가능했던 要因은 무엇인가. 維新體制는 經濟成長으로 볼 때에는 效率的이었나. 後者の 물음에서 新軍部政權期를 除外한 것은 開發獨裁論者들이 별반 言及하지 않기 때문이다.

韓國에서 經濟 發展의 要因은 무엇인가. 먼저 韓國에서는 日帝末, 解放直後에 대단히 深刻하게 經濟의 어려움에 處해 있었다는 점을 想起해볼 必要가 있다. 解放直後 南北經濟의 分離와 植民經濟의 屬性 등으로 經濟의混亂과 不安은 막심하였다. 1948年 分斷이 되었을 때에도 南의 境遇 그러한 狀況이持續되었고, 1950年の 韓國戰爭은 經濟를 最惡의 狀態에 빠뜨렸다. 韓國經濟가 어느 정도 軌道를 잡고 成長하기 시작한 것은 1957年頃부터였다. 그러나 1957年에서 1960年代 前半까지 韓國經濟는 繼續어려움에 처했다가 1960年代 後半부터 高度成長을 하였고, 1970年代末 1980年代 前半期에 어려움을 겪다가 1986-1988년에 史上 最大的 成長을 보였다.

1960年代 中盤부터 經濟成長率이 높아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美國은 1950年代 後半에 借款導入에 의한 經濟發展을 勸했지만, 이 時期에는 美國과 日本, 獨逸 등의 資本導入이 많았고 韓日協定妥結, 베트남戰爭景氣 등도 작용하였다. 곧 이 時期에는 外部로부터 資本調達이 容易하였다. 또 1960年代末 1970年代에는 先進國에서 斜陽化된 重化學工業을導入하여 勞動集約的 산업과 함께 發展시킬 수 있었다.

經濟發展의 動因은 内部에도 있었다. 朴政權은 權力의 正統性 問題 때문에 經濟開發에 앞장섰고, 그것은 이 時期 韓國社會의 雾靄氣 때문에 그려하였다. 그와 함께 經濟成長을 이끌어갈 테크노크라트도 이 時期에 상당수가 集積될 수 있었고, 經濟에 關한 統計 ability 등도 向上되었다. 國家의 ability이 상당부분 커졌던 것이다. 左右對立과 戰爭으로 因한 社會의 平準化는 成就意志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經濟成長의 最大的 主役은 勞動에 있었다. 1950年代에 普通教育이 全面的으로 實施되었고 中等·高等教育도 크게 擴充되었던 바, 初等學校學生數는 1945年的 135萬餘名에서 1960年에 362萬餘名으로 늘어났다. 韓國은 日本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教育을 받은 人口가 많은 나라로 集計되었다. 그런데 韓國은 解放 以後 農村이건 都市건 줄곧 失業者로 넘쳐흘렀고, 日帝에 國土를 强占당한 이래 지

독한 貧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勤勞慾과 成就慾이 強하고, 教育을 받은 良質의 無窮無盡한 產業豫備軍의 存在야말로 韓國經濟 發展의 原動力이자 기둥이었다. 이들은 세계 最長의 勤勞時間에도, 雖시 劣惡한 作業 環境에도 不滿 없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할 準備가 되어 있었다.

維新體制는 效率的이었다. 維新體制는 주로 議會政治의 消耗的인 政爭을 最少화하고 權力を 1人의 領導者한테 集中하여, 效率을 極大化하여 國家를 이끌어간다는데, 그것의 成立 理由를 두었다. 그러나 維新體制에서 政治는 '效率的'이지 못했다. 1973年에는 金大中拉致事件, 1975年에는 朴正熙의 夫人 陸英修 被殺事件이 있었다. 學生들과 在野人士, 宗教人, 記者, 野黨人士들은 끊임없이 反維新鬪爭과 自由回復鬪爭을 벌였다. 이 때문에 1號에서 9號에 이르는 緊急措置를 宣布하여 反維新鬪士를 重刑에 처하고, 極度의 抑壓措置를 取해야했다. 그러나 結局 維新體制는 不景氣가 밀려오는 가운데 鮮明野黨의 登場에 의한 政治鬪爭과 釜馬抗爭에 의해 危機에 몰렸고, 朴政權 親衛部隊에 의한 大量虐殺을 두려워한 金載圭 中央情報部長에 의해 1979年 10月 26日 朴正熙가 殺害당함으로써 終焉을 告하였다. 維新體制가 들어선지 7년만이었다.

維新權力이 財閥 中心의 經濟政策을 垂 것이 經濟發展에 效率의이었는가는 不確實하다. 朴正熙 軍部政權은 5·16쿠데타 얼마후 不正蓄財者들을 財閥로 발돋움하게 하는 政策을 내놓았고, 1960年代도 財閥 特惠가 있었지만, 維新權力은 經濟力의 集中을 圖謀하여, 財閥 中心의 經濟政策을 用了다. 특히 經濟 쿠데타로 불리는 1972年 8·3私債凍結措置는 財閥을 살리기 위한 非常手段이었다.

더욱이 重化學部門의 過大重複投資는 경제의 效率性은 저해하였으나, 財閥을 恐龍처럼 키웠고, 財閥의 版圖를 바꿔놓았다. 政府의 各種 特惠로 財閥에의 經濟集中力은 훨씬 커졌다. 그 反面 中小企業의 創意性은 피어나기 어려웠고, 수많은 中小企業이 財閥에 併吞되었다. 확실히 維新體制·新軍部體制에서 보여준 獨裁는 執權세력과 財閥 등 極右反共勢力의 中樞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勞動者·貧民 등 庶民大衆의 犠牲을 强要하였다.

維新體制下에서 組合勞動者數는 크게 增加하였으나, 勞動者의 罷業이 없었다는 점을 根據로 維新體制의 效率性을 主張할지도 모른다. 1970年代에 罷業이 적었던 것은 維新쿠데타 發生 이전에 宣布된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및 그밖에 勞動運動을 制約한 法律 등과 關聯하여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 基本的으로는 龐大한 產業豫備軍의 存在였다. 1970年代 末期에 이르러 產業豫備軍이 크게縮小되고 景氣가 惡化되어, 東一紡織事件, YH사건 등이 일어나 維新體制를 威脅하였고, 1980年代 前半期에 新軍部가 勞動運動을 강력히 彙壓하였는데도 勞動者의 鬥爭이 끊이지 않은 것은 주로 勞動者의 意識 提高와 勞動需給에 起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維新期에 維新體制가 大衆들로부터 얼마나 支持를 받았는가도 不確實하다. 企業家들은 大財閥일 수록 維新쿠데타 以前에 維新體制가 必要하다고 主張하지는 않았으나, 維新體制가 成立된 후 維新體制最大의 受惠者였으므로 그것을 强하게 支持하였음에 틀림없다. 農民層의 支持도 時機와 地域에 따라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1978년 12月 總選에서 維新體制下인데도 得票率에서 野黨이 與黨을 1%나 늘렸고, 이것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 鮮明野黨이 登場하여 維新體制 没落의 直接的인 要因을 이룬 것은 示唆的이다. 維新體制가 崩壞한 以後, 維新體制에 热誠的으로 加擔한 자들조차 維新體制를 擁護하지 않았다.

脫冷戰 國際秩序와 人權

脫冷戰(post-coldwar)時期 新しい 國際秩序의 틀과 內容은 아직 그 實體가 뚜렷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現實 國際秩序에서 冷戰思考는 이미 그 有效性을 衰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冷戰體制의 崩壞는 西歐資本主義 中心의 世界主義가 가지는 虛構性을 暴露하는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同時に 閉鎖的인 民族主義, 宗教的 根本主義와 市場의 機能에 대한 國際社會와 個別國家의 統制力이 크게 衰失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自由貿易經濟體制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窮極的 完成에 대한 漠然한 樂觀과 人種清掃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民族·宗教紛爭들과 新國際經濟秩序에 대한 暗鬱한 展望이 뒤섞여 있다. 그렇지만 冷戰以後 國際秩序가 國家權力과 人權에 대한 새로운 省察을 要請하고 있음을 現實的으로 分明하다. 이제 過去 冷戰體制에서 理念의 이름아래 論議해 왔던 價值들을 아우를 수 있는 普遍的 言語는 人權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強力한 人權侵害者는 國家權力이다.

韓國의 冷戰體制의 人權現實

더구나 冷戰體制속에서 가장 큰 犠牲을 치룬 韓民族에게 冷戰은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進行形이다. 韓國의 民主主義와 人權狀況을 規定해 온 分斷現實과 그것을 둘러싼 周邊强大國들의 利害關係 對立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解放後 1980年代에 이르는 軍事獨裁時期 동안 冷戰의 危機感을 끊임없이 助長하면서同時に 安保를 強調함으로써 民主主義와 人權을 犠牲시켜 政權을 維持해 왔던 國家權力의 屬性이, UN安全保障理事會와 OECD會員國으로서 脫冷戰國際秩序의 中心에서 있는 1990年代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國에서 人權現實을 把握하기 위해서 冷戰과 脫冷戰時期를 나누어 달라진 現象들을 살피는 일은 意味가 크지 않다. 國際秩序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國家權力의 人權侵害의 本質의 連續性을 確認하는 作業이 더 重要할 것이다. 先進國 水準의 經濟成長과 民主主義 發展을 함께 이룬 文民政府라는 韓國의 國際的 이미지 뒤에서는 은밀하게 그러나 더욱 가혹하게 國家權力機關들에 의한 人權侵害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法과 制度로써 뒷받침된 國家權力의 暴力이 現存하는 한, 韓國이 加入한 國際人權條約들과 憲法上 基本權條項은 裝飾的 規定에 不過한 것이며, 人權狀況의 本質的 改革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國家權力과 國家暴力機構의 本質

近代 資本主義國家에서 國家權力에 依한 合法的인 暴力의 獨占은 그러한 暴力이 直接的이고 公共然한 方式으로 行使되지 않는 境遇에도 여전히 權力의 決定的 要素가 된다. 나아가 國家權力은 종종 스스로 制定한 法規範을 直接的으로 違反하는 暴力を 行使한다. 그래서 不平等한 社會에서 恒常 法보다 優越한 것은 合法的인 暴力과 抑壓의 物理力 所有者인 國家이다.

그리고 國家權力의 活動을 뒷받침하는 國家機關들의 集約體系인 國家機構 또는 國家裝置는 組織化된 物質的 힘이며, 이를 통해 支配階級은 國家權力を 行使한다. 國家機構는 政府

機構(立法府와 行政府), 行政機構, 司法府, 國家暴力機構(國家暴力裝置)로構成된다. 이러한 國家裝置들은 組織된 物理的 抑壓을 通해 社會關係의 再生産을 保障해주는 機能을 擔當하고 있다. 勿論 國家機構의 性格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해 決定된다. 특히 獨裁의인 國가권력은 直接적으로 억압적 公權力を 행사하는 國家暴力機構, 즉 警察과 軍隊, 情報機關, 行刑機關을 持續的으로 擴大強化한다. 따라서 國家暴力機構는 國가권력행사와 存續의 必要條件인 同시에 必然的으로 國民의 人權保障에 대한 制約條件이 된다.

韓國의 國家暴力機構

韓國에서는 警察, 戰鬪警察, 檢察, 國家安全企劃部(舊 中央情報部), 軍搜查機關(國軍機務司令部), 行刑機關(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少年院)이 國家暴力機構를 구성하고 있다. 獨立된 司法府의 統制, 機關相互間의 牽制, 民主言論의 監視를 通해 法治國家의 權力制限原則이 實現되지 않을 때 國家暴力機構는 가장 커다란 人權侵害權力이 된다. 韓國의 近現代史는 警察과 國家安全企劃部로 대표되는 國家暴力機構에 의한 強制連行, 不法監禁, 示威隊 鳴打, 拷問, 獨房監禁, 戒具使用, 轉向強要, 政治테러와 같은 殺人的인 國家테러(state terror)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反共이데올로기와 國家保安法으로 대표되는 惡法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國가안보의 虛偽名分을 내세워 正當화하는데 忠實했다.

따라서 韓國의 國家暴力機構는 反共이데올로기, 節次法의 保障을 否認하는 不法慣行과 法의 土臺로서의 違憲法律을 核心標識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國家暴力機構의 反人權의 本質은 日帝強占期로부터 비롯되어 反共軍事獨裁政權時期를 거쳐오는 동안 擴大強化되고 精巧化·固着化되어 왔다.

國家暴力機構의 基源 - 日帝強占期와 美軍政 (1910-1948)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에서 國家暴力機構는 支配權力を 보장하는 基盤이 된다. 특히 披植民時期를 거쳤던 國가권력이 植民統治機構를 自身들의 權力維持 必要에 따라 再組織하는境遇, 植民支配期間中에 存在했던 國家機構의 抑壓的 屬性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暴力機構는 진정한 民族的 社會的 解放을 向한 一般大眾의 努力を 抑壓하는 道具로서 사용된다. 韓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日本帝國主義의 韓半島 統治를 위한 暴力機構의 前面에는 憲兵警察制度가 登場했다. 1910年 強制合併 以後에는 憲兵警察이 軍事, 行政, 司法警察 業務까지 擔當했던 反面 司法制度는 總督府 行政의 一部로 編入되어 獨立性이 전혀 保障되지 않았다. 특히 犯罪即決例(1910)에 따라 即決權이 警察, 憲兵에 의해 事實上 任意의으로 行使되고, 不法逮捕, 拷問 등으로 人權侵害가 끊이지 않았으며, 警察犯處罰規則(1912)을 通해 抗日運動을 崎酷하게 役壓했다. 1919년 3·1運動 이후에는 普通警察制度가 施行되었으나, 오히려 모든 警察機構는 3倍로 增加하였다. 이어 日帝의 大陸侵略을 契機로 植民地파시즘體制가 深化됨에 따라 治安維持法(1925),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1941)과 같은 法制를 通해 억압적 統制가 더욱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韓國은 日帝強占期를 거치면서近代化라는 名分下에 西歐의 近代制度를 傳受 받게 되었으나, 그것이 日帝의 植民地 經營의 一環이었기 때문에 自由主義와 法治國家原理에 立脚한 人權思想은 排除된 채 抑壓과 收奪의 統治機構로서의 法技術만 터득한 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刑事法은 國民의 인권을 억압하는 方向으로 膨脹하면서 適法節次는 無視되고, 不法의인 慣行과 抑壓的이고 差別의인 法執行이 痞疾化되었다.

解放後 美軍政은 韓半島에서 美軍의 占領政策을 效果的으로 隨行하기 위해서 日本의 植民地暴力機構를 그대로 利用함으로써 韓國의 基本的 支配構造를 決定지었다. 게다가 過去親日派官僚들과 右翼勢力에게 再編된 美軍政官僚機構의 職責을 맡김으로써, 해방이후 南韓

에서 日帝暴力機構 殘滓의 清算問題를 不可能하게 했다. 이들의 權力構造 再編入現象은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異質化되면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冷戰意識과 冷戰構造의 影響力과 無關하지 않다. 즉 美軍政은 남한내에서의 左翼勢力を 統制하여 蘇聯에 대한 戰略的 防波堤 構築이라는 占領目標 實現을 위해 既存의 植民地統治機構體制를 效果的으로 利用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軍政警察은 解放空間에서 最大의 物理的 強制力を 가진 國家暴力機構로서 日帝時代의 拷問과 操作의 搜查技法을 日常的으로 使用했다. 그리고 親日派와 右翼政治人們에 掌握됨으로써 左右翼翻爭過程에서 지배권력의 道具가 되었다. 이때부터 歷代政權의 實體는 表面的으로 自由民主主義를 體制理念으로 標榜하면서도 國家暴力機構의 擴大強化 現象을 同伴한 獨裁權力으로 特徵지워지게 된 것이다.

國家暴力機構의 形成期 - 韓國戰爭과 再分斷 (1948-1961)

1948년 政府樹立과 함께 더욱 뚜렷해진 冷戰構造를 틈타 日帝警察 出身들은 警察뿐만 아니라 軍隊와 行政組織 全般에 걸쳐 進出하게 된다. 左翼暴動을 鎮壓하는 過程에서 確固한 權力基盤을 構築한 警察은 1948년 反民族行爲者處罰特委가 構成되어 親日警察들을 逮捕하자 이를 襲擊하여 結局 瓦解시킬 程度였다. 또한 野黨彈壓에도 앞장 선 警察은 이때부터 政治工作과 不法搜查慣行의 나쁜 傳統을 세웠다. 이처럼 警察은 第1共和國의 反共·保守的 權威主義 體制를 확립하는데 中樞的 役割을 隨行했다.

1950년 韓國戰爭을 거치면서 再次 강화된 警察은 李承晚政權期 동안 民主化示威鎮壓과 官權選舉에 動員되면서 자유당政權의 私兵化傾向을 더욱 뚜렷히 해 나갔다. 급기야는 1960년 不正選舉에 抗議하는 示威대에 대한 警察의 무차별발포는 자유당政權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4월혁명이후 제2공화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警察을 비롯한 國家暴力機構의 축소였다.

國家暴力機構의 강화기 -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1961-1980)

그러나 1961년 5·16 軍事쿠데타는 4月革命의 成果를 全面 부인하고, 反共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강력한 權威主義體制의 鞏固化를 가져왔다. 대개 정통성이 결여된 軍事政權은 暴力性과 經濟成長에의 效率性을 유일한 存立基盤으로 삼기 마련이다. 그 두가지가 결합된 政治形태가 곧 開發獨裁이다. 즉 抑壓的 經濟成長 優先主義體制로 정의되는 朴正熙政權은 政治적 民主主義의 不在와 經濟成長優先政策의 弊害로 인해 계속해서 體制 正當性에 도전받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國家暴力機構의 물리력과 정보력을 통한 強壓的 統治體制가 더욱 強化되었다.

즉 分斷時代를 貫通해 온 反共至上主義와 國家安全保障이라는 支配이데올로기와 함께 體制유지의 가장 전면에 動員된 것이 警察과 中央情報部였고, 이를 軍隊가 뒷받침했다. 특히 維新體制에서 警察은 政權유지의 尖兵役割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사회전분야에 걸친 情報查察은 警察의 核心的인 업무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軍事政權의 핵심들에 의해 政權維持機關으로 창설된 中央情報部는 警察과 檢察, 심지어는 法院까지 통제하는 實質的 意味에서의 最高權力機關이었다. 二十여년에 걸친 長期獨裁는 維新쿠데타過程에서의 政治工作, 選舉介入, 間諜事件操作, 勞動爭議彈壓에 앞장선 中央情報部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모든 官廳과 學院, 言論機關에는 中央情報部 情報員이 上주하고 있었고, 政府에 批判的인 政治人, 言論人, 公務員, 宗教人, 學生들을 強制連行하여 密室에 不法監禁하고 고문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國家暴力機構의 暴力性和 反人權性은 行刑機關에서 가장 뚜렷히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受刑者들에 대한 劣惡한 處遇여건을 물론이거니와 民主化運動으로 投獄된 在野·學生運動家들에 대한 獨房監禁과 구타가 계속되었다. 특히 轉向強要를 거부하는 國家保安法사범들에 대

해서는 苛酷한 暴力이 組織的으로 자행되어, 個人的의 양심마저도 抑壓的으로 통제하려는 파시즘의 典型的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強力한 國家暴力機構를 뒷받침하면서 政權維持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오늘날까지 惡法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들도 쿠데타에 의해 급조된 國家再建最高會議나 1972년 維新 당시 非常國務會議라는 超憲法的 非常立法機構에 의해서 制定된 것이다. 그런만큼 權力의 속성은 廣範圍한 人權侵害을 가능케 해 주는 刑事特別法들, 搜查節次와 搜查機構運營에 관한 法律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國家保安法(1948년 國家保安法, 1961년 反共法, 1980년 國家保安法)이다. 國家保安法의 制定과 改惡, 그리고 憂意的 解釋과 適用의 歷史는, 그것이 政權維持의 苛酷한 수단으로써 言論 出版 學文 藝術 宗敎 教育 勞動 統一運動 全般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르는 抑壓을 통해 憲法과 國際法에 확인된 基本的 人權들을 정면으로 부인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48년 당시 左翼勢力を 겨냥해 제정된 國家保安法은 政治人們에 대한 彈壓은 물론 政治組織, 間諜團 操作事件들을 비롯하여 新聞기사나 論文으로부터 무협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醉中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北韓郵票收集에까지도 엄격히 적용되었다. 특히 國家保安法의 적용을 둘러싸고 강제連行, 不法감금이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는 모든 搜查機關에서 일상화되었다. 檢察과 司法府도 이에 대한 統制는 고사하고 事後的인 正當化와 은폐에 積極的으로 協力했다.

國家暴力機構의 재강화기 - 新軍部독재 (1980-1992)

維新政權이 崩壞된 후 그 體制를 온전히 이어받은 軍事政權이 再登場하는 過程에서 빚어진 1980년 光州의 참상을 解放 이후 확대·강화되어 온 權力의 反民主的 暴力性이 극에 달한 結果였다. 이른바 新軍部는 이러한 執權過程의 脆弱性으로 인해 維新政體보다 더욱 強壓的인 통치를 수행했다. 권력중심에서는 國軍保安司令部(現 기무사령부)를 통한 軍部의 直接的 影響力이 增大되었다. 또한 國家保衛非常立法會議라는 초헌법적立法機構를 통해 國家保安法, 社會保護法, 言論基本法, 勞使協議會法과 같은 第5共和國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軍事獨裁의 傳統을 계승했다.

그리고 中央情報部를 再編한 安全企劃部와 警察은 軍事政權의 暴壓的 統治構造의 중추기구로 再強化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 두드러지게 강화된 것은 示威專擔 戰鬪警察과 私服체포조 (일명 白骨團)이다. 間諜浸透對備를 目的으로 설치된 준軍事組織인 戰鬪警察은 정작 對間諜作戰이 아닌 무차별 檢問, 檢索, 示威隊 暴行, 催淚彈 亂射 등 對國民彈壓作戰에動員되었다. 이처럼 戰鬪警察은 戒嚴宣布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물리적으로 하여금 治安을 유지케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戰鬪警察이動員되는 한 사실상 지속적인 緊急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第5共和國 執權末期에 이르자 全斗煥政權의 暴壓性에 대한 廣範한 불만이 持續的인 民衆運動의 성장을 媒介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 大統領直選制要求로 護憲과 改憲論議가 부딪히는 狀況에서, 警察이 大學生 朴鐘哲을 不法監禁 常態에서 수배學生의 所在를 추궁하던 끝에 고문, 殺害하는 事件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全國民的인 抵抗을 초래했고, 결국 6·29宣言을 통해 對國民妥協策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大統領選舉에서 사실상의 政權交替에 失敗한 결과, 5共和國의 支配權力構造를 고스란히 承繼한 盧太愚政權하에서 國家暴力機構의 本質과 役割은 지속되었다. 1988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勞動運動과 市民運動에 대해서는 強力한 公權力投入이 곧 뒤따랐고 1989년에는 公安合同搜查本부가 설치되어 檢察과 警察, 安全企劃部에 의해 이른바 公安政局이 주도되었다. 勞動爭議 現場에 대한 대규모 警察力投入, 集會·示威에 대한 強制解散 過程에서의 暴力과 殺人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1990년 保安司의 民間人 秘密사찰사실이 暴露되면서 守勢에 몰린 政權은 곧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彈壓을 강화했

다. 결국 마구잡이식 連行, 고문과 자백강요, 銃器濫用, 폭력적인 示威鎮壓이 늘어나는 만큼 인권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廣範圍하고도 持續的인 國家保安法 改廢 노력 끝에 1991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基本的 前提와 犯罪유형들에는 변함이 없어 本質的으로 개정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檢察과 法院의 國家保安法 해석·적용에서 변화가 없을 뿐더러, 더욱 빈번한 남용을 통해 이른바 公安政局이 상시화되었을 뿐이었다.

體制위기와 國家暴力機構

이처럼 反民主的이고 反人權的인 歷代 政權期間동안 國家暴力機構들은 政權維持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動員되어 왔으며,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護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압해 왔다. 解放 이후 分斷狀況에서 國家安保를 내세운 人權侵害는 물론 權威主義의 통치양식에 길들여진 傳統的 의식의 殘在, 日常的인 暴力에 무디어진 社會 全般의 人權意識水準에서 비롯된 축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根本的인 原因은 韓國의 歷史와 政治狀況을 규정하고 있는 基本的인 矛盾構造, 즉 分斷狀況과 취약한 政權의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權力獨占, 그리고 跛行의 資本主義 經濟發展으로부터 오는 體制危機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南北分斷과 韓國戰爭,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南北韓間의 대결상황에서 비롯된 安保價值優先, 過剩 内면화된 分斷意識, 兵營國家的 性格, 경직된 社會構造는 必然的으로 高度로 中央執權적인 官僚制構造와 抑壓的 暴力機構의 強化를 가져왔다. 그리고 軍事政權의 登場과 이에 따른 군부엘리트의 長期間에 걸친 執權은 政權의 정통성 문제가 항상 尖銳한 政治적 爭點으로 부각되게 했고, 따라서 體制의 抑壓的 性格도 強化되어 갔다. 이러한 體制危機에 歷代政權이 대응해 온 방식은支配이데올로기, 즉 反共, 經濟成長, 安定이데올로기에 의한 은폐 내지 正當화와 物理的 抑壓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犠牲을 댓가로 體制危機를 모면하려는 國家權力은 國민의 廣範圍한 抵抗을 초래했고, 다시 그抵抗을 억누르고 支配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家暴力機構를 動員해 過度한 公權力を 投入하는 惡循環이 되풀이 되어 왔다. 韓國의 歷史的·政治的 狀況에서 胚胎된 基本 矛盾構造로부터 結果되는 體制危機가 累積的으로 持續되는 한 國家暴力機構의 人權侵害의 本質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른바 文民政府의 人權現實과 國家暴力機構

이른바 文民政府의 過去清算과 改革作業이 이러한 惡循環의 고리를 끊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國家暴力機構의 法的 土臺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國家保安法과 安企部法을 비롯한 政權安保法制들에 대한 改革作業이 오히려 退步하는 가운데 人權侵害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良心囚는 1993년 金永三 政府 출범후 잠시 減少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增加하여 1994년 775명, 1995년 623명, 1996년 11월 현재 1,180名에 이르고 있다.

특히 金永三政府의 내용없는 改革政策이 限界에 부딪혀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서, 北韓 핵사찰논란과 1994년 金一星 死亡 以後의弔問波動, 그리고 1996년 연세대 事態를 계기로 保守言論의 庇護아래 대규모 人權侵害가 잇달았다. '新公安政局' 속에서 이른바 主思派學生運動에 대한 거침없는 彈壓이 자행되었으며, 마치 文民政府라는 名稱이 모든 人權侵害의 免罪符라도 되는 듯이 過去 軍事政權을 능가하는 國家保安法의 濫用과 大量拘禁 고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년동안 높은 호응속에 계속되어온 대학교양강의와 一百萬名이 넘는 讀者를 가진 小說 '太白山脈'의 作家에 대해서도, 컴퓨터通信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國家保安法을 적용하는데 주저치 않고 있다. 우리는 國家保安法關聯者들의 搜查過程에서 저

질러지는 고문과 苛酷行爲가 ‘新韓國’에서 비로소 根絕되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大統領이 다짐하던 ‘正義가 강물처럼 흐르는, 人權이 尊重되는 社會’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不正과 人權侵害의 事例들만이 하수처럼 흘러넘친다.

다만 變化가 있다면 人權狀況은 계속해서 惡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政治的 緊張은 그에 相應할 만큼 고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人權侵害와 政治的 危機의 相關關係가 緊密할수록 人權保障의 폭이 확대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政治的 위기없이 人權狀況이 지속적으로 惡化될, 다시 말해서 國家權力이 큰 政治的 負擔없이도 國民의 基本權을 지속적으로 侵害할 可能性은 더욱 커진 것이다. 이것은 一時的인 눈가림에 불과한 개량화정책과 言論統制를 통해 한층 교묘해진 支配方式과 支配이데올로기의 攻勢를 통해 오히려 強化된 國家暴力機構에 대한 警戒心을 일깨워준다.

冷戰時期 아시아에서의 人權侵害와 그 賠償問題

-- 韓國에서의 虐殺事件과 賠償의 經驗

朴元淳

1. 序論

1945년 제2차 世界大戰의 終末과 더불어 온 世界에 드리우기 시작한 冷戰은 이데올로기적인 對立과 함께 嬉慘한 對決과 災難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특히 아시아는 蘇聯·中國의 共產圈 國家들과 美國 등 西方國家들 사이의 대립과 경쟁의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립과 경쟁은 이 지역을 戰爭터로 만들기 일쑤였다. 베트남 戰爭, 韓國戰爭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공식적인 戰爭이 아닌 경우에도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의 대리전 樣相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內戰과 虐殺事件이 잇따랐다. 韓國의 경우에는 左右의 대립이 1950년 韓國戰爭을 전후하여 극에 달하여 수만명이 이 가운데 犠牲되었다. 戰爭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社會와 人間을 狂亂의 지경으로 내몰아 수없는 報復과 虐殺이 거듭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蘇聯과 東歐團이 崩壞하고 東西의 冷戰은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冷戰의 殘在는 완전히 消滅하지 않았다. 특히 冷戰시대에 벌어졌던 여러 虐殺事件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재조명되지 못하기 일쑤였다.

韓國의 경우에도 1987년 이른바 '6月 抗爭'에 의해 軍事獨裁政權이 물러나고 國民들의 直選에 의해 大統領이 선출되었으나 軍事獨裁의 연장선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3년 이른바 '文民政府'가 출범하였으나 이 역시 過去의 잘못된 歷史를 시정하는 데에는 限界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全斗煥, 盧太愚 두 前職大統領을 법정에 세워으로써 過去清算의 단초를 열기는 하였으나 그것뿐이었다. 특히 過去의 集團虐殺事件에 대해 제대로 真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全面的인 賠償政策을 실시하는 데에는 이르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2. 韓國에서의 虐殺事件

(1) 虐殺犠牲者의 숫자

韓半島에서 지난 冷戰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虐殺당했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동안 虐殺事件에 대한 진실은 묻혀 있었다. 虐殺의 責任을 져야 할 權力者들은 그 虐殺의 진상과 證據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그 被害者의 遺族들은 감히 虐殺에 대한 真相을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證據는 湮滅되거나 사라졌고 證人들은 죽어갔다.

(2) 左翼과 北韓軍에 의한 集團虐殺事件

남한 警察과 右翼단체 회원들에게 가해진 虐殺은 주로 6·25전쟁 期間 중 北韓의 남한 점령期間에 이루어졌다. 전쟁 이전에 美軍과 南韓 군경 및 右翼에 의해 저질러진 彈壓과 虐殺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韓國戰爭 개전 초기 北韓은 南韓의 政治세력에 대한 숙청을 실시하였다. 물론 이것은 民族反逆者, 親日分子, 親美分子 등을 대상으로 하여 裁判을 통한 起訴와 處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분히 北韓의 통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南韓 각 지역에서 左翼分子들과 北韓군은 함부로 報復을 일삼았다.

특히 北韓이 UN軍의 개입에 따라 후퇴하면서 더욱 심한 虐殺이 자행되었다. 北韓은 1950년 9월 중순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퇴명령과 함께 “UN軍 上陸시 地主가 될 모든 要所를 提舉할 것을 指示”하였고 이에 따라 集團虐殺이 이루어졌다. 全北 沃溝郡의 한 面의 경우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反動分子’와 그 家族 574名이 虐殺되었다. 이와 같이 진행된 北韓의 南韓 占領地域 내에서의 集團 被殺者數는 南韓 政府의 公式推計로 128,936명이나 된다.

(3) 右翼과 韓國軍에 의한 集團虐殺事件

1) 美軍政 期間(1945-1948)의 集團虐殺

日本帝國主義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함께 韓國 國民들은 동시에 分斷의 아픔을 겪게 된다. 특히 美軍과 蘇聯軍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그 以南과 以北을 점령하고 독자적인 權力を 창출하게 되어 분단은 固着化하게 된다.

美軍政 3년 동안 韓國민은 日帝의 清算은 커녕 日帝의 遺制가 존속하고 自主權이 蹤躡되면서 이에 대한 抵抗運動을 벌이게 된다. 이것을 彈壓하는 過程에서 이른바 濟州 4·3事件, 麗順事件, 大邱10月事件 등이 일어났다.

하나의 예만 들겠다. 1946년 10월 大邱에서 일어난 이른바 ‘大邱暴動’(進步的 歷史學者들은 이를 10月 人民抗爭이라 부른다)은 식량 配給을 요구하는 勞動者를 警察이 發砲해 殺害한 事件에서 비롯되어 大邱 全域과 慶尙北道 일원을 暴動과 不安의 도가니로 몰고 간 事件이었다. 이 事件에서 示威 參加人員은 3백만명, 사망 3백명, 行方不明 3천 6백명, 負傷 2만 6천명, 被捕 1만 5천 여명이었다.

2) 韓國戰爭 以前(1948-1949)의 集團虐殺

美軍政이 끝나고 李承晚政權이 들어선 1948년 8월 이후 左翼에 대한 彈壓이 더욱 노골화하게 된다. 國家保安法 등의 법률에 의해 1949년 한해 동안에도 11만 8,621명이 拘束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虐殺事件은 이른바 ‘聞慶 良民虐殺事件’이다. 1949년 12월 24일 重武裝한 國軍兵力 60여명이 慶尙北道 聞慶郡 山北面 石鳳里에 나타나 마을을 불지르고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住民들을 마을 앞 논두렁으로 끌어낸 뒤 機關銃을 쏘아대 86명이 목숨을 잊은 것이다. 이 事件은 그후 철저히 은폐되었고 1960년 4.19 이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3) 韓國戰爭(1950-1953) 中의 集團虐殺

韓國戰爭의 慘禍는 南北 軍人們끼리의 戰鬪와 그로 인한 殺傷에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民間人們이 적에게 協力한다는 名目으로 과리목숨이 되었다.

우선 左翼 빨치산 活動의 根據地였던 智異山 부근 居昌郡 神院面, 山淸郡 今西面, 咸陽郡 柳林面, 南原郡 朱川面, 咸平郡 月也面, 羅山面, 淳昌郡 東溪面, 雙置面 등에 있는 山間部落과 住民들이 그 犠牲者가 되었다. 무엇보다 智異山에 가장 가까웠던 慶南 山淸, 咸陽, 居昌 세 지역의 虐殺事件은 가장 慘酷한 예이다. 빨치산의 討伐를 위해 派遣된 部隊가 이 地域에서 住民들이 빨치산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951년 2월경 나흘 동안 거의 1천 5백명의 誣告한 주민들을 虐殺하였다.

이보다 먼저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이 일어난 직후인 6월 28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水原 以南의 韓半島 全域에서 30만명 이상의 非武裝 民間人인 韓國軍, 警察, 右翼青年團體 등에 의하여 무참히 虐殺당했다. 過去의 左翼人物들을 ‘國民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이라는 이름하에 강제 가입시켰다가 전쟁이 시작되어 北韓의 진군과 더불어 이들이 北韓의 지원세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을 虐殺해 버린 것이다. 최대의 虐殺事件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南韓인 민간인 사상자수는 99만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이 중 全羅南道가 20만명에 육박하였다.

‘전쟁 期間 중 國軍이 北韓점령지역에서 벌인 虐殺事件도 적지 않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 가운데 黃海道 信川里 虐殺事件은 北韓이 가장 극악한 전쟁범죄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이다. 한 마을의 男女老少 수백명이 虐殺당한 것이다.

4) 韓國戰爭 이후(1954-1990)의 集團虐殺

가장 최근의 集團虐殺事件으로서는 1980년의 光州虐殺이 유일하다. 朴正熙 軍事政權이 무너진 뒤 이른바 '民主化의 봄'을 짓밟는 과정에서 군부에抵抗한 光州시민을 무차별 殺害한 이 事件에서 수백 명의 市民이 犠牲당하였다. 이 鎮壓과 虐殺의 책임을 진 全斗煥 軍事政權은 결국 이 虐殺의 負擔 때문에 1987년 權座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1996년 拘束되어 1심에서 死刑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5) 韓國現代史에서의 個人的 虐殺事件

집단적인 虐殺事件이 그토록 빈발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虐殺事件이 잇따랐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개인이 권력의 손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韓國 現代史에서 진실로 暗殺과 虐殺, 疑問의 죽음들, 政治적 이유에 의한 태려, 부당한 拘禁과 재판, 고문과 處刑 등이 줄을 이었다.

특히 政治정세와 社會분위기가 안정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는 집단적 虐殺事件은 수그러드는 편향이 있었다. 그러나 個人的 虐殺事件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權力의 필요에 의해 政治적 반대자를 죽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거나 裁判의 형식을 거쳐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3. 韓國에서의 犠牲者에 대한 賠償의 現實과 限界

(1) 概觀

"重大한 人權侵害에 대한 賠償"에 관한 UN 特別報告官 Theo van Boven 교수는 人權侵害의 被害者에게 주어져야 할 賠償의 形態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賠償. 後者에는 肉體的 또는 精神的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 형태로서 犠牲者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目的에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① 사실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
- ③ 책임자 처벌
- ④ 犠牲者,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⑤ 犠牲者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⑥ 犠牲者들을 돌보는 기관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 ⑦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 ⓐ 保安軍에 대한 엄격한 統制, 특히 民間統制下에 두는 것
 - ⓑ 軍事법정의 權限을 제한하는 일
 - ⓒ 人權運動家의 法律家들을 效果的으로 保護하는 일
 - ⓓ 司法府의 獨立性을 強化하는 일
 - ⓔ 拘禁과 登錄制度를 改善하는 일
 - ⓕ 保安軍과 法執行者들에게 人權教育을 提供하는 일

UN 人權委員會에 의해任命된 特別보고관의 보고인 만큼 이 結論은 國際的 基準으로 보아도 無妨하겠다. 이 기준에 비추어보면 韓半島에서 벌어진 虐殺에 대한 책임과 그 犠牲者에 대한 賠償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 真相公開와 사죄

막대한 虐殺事件이 韓國現代史를 뒤덮고 있지만 政府 次元에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그 피해의 實態를 조사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虐殺당했는지 알길이 없다. 더구나 政府는 이와 관련한 文書들을 機密文書로 취급하여 제대로 公開조사하지 않아 民間人们的 그에 대한 接近조사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犠牲者와 그 遺族에게 제대로 한 번 公開的으로 사죄한 사실조차 없다.

(3) 南韓과 北韓 政府는 서로 이러한 虐殺事件을 非難하면서 그 責任을 相對方에게 傳家하기 바쁘다. 각자가 벌인 虐殺事件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상대의 虐殺事件만 문제삼았다. 南韓의 경우 韓國戰爭이 北韓의 侵略에 의한 것이라는前提下에 그期間 중에 있었던 모든 虐殺을 北韓의 소행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金一星 死亡 당시, 弔問論爭이 일었을 때 韓國戰爭의 責任者로서 전범인 金一星 弔問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政府와 言論이 보였다. 한편 北韓 역시 南韓의 점령 당시 벌어졌던 엄청난 虐殺에 대하여 是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北韓을 통틀어 虐殺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처벌받을 수가 없었다. 그 虐殺은 한個人에 의해서 이루어졌기보다는 한 集團에 의해서, 때로는 政府의 主導와 默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責任 추궁이 어려웠다. 지난 반세기 동안 權威主義政府가 계속 앞의 정부를 승계했기 때문에 철저한 過去清算과 加害者 處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때로는 당시 輿論때문에 잠시 處罰의 시도를 한 사례는 있으나 제대로 刑을 선고받거나 또는 복역하지 않았다. 居昌良民虐殺事件과 관련하여 1951년 12월 16일 高等軍法會議는 良民虐殺 및 國會調查團 襲擊事件의 責任을 물어 吳益均 대령에게 無期懲役, 한동석 소령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나 이들은 그 이듬해 刑執行停止로 풀려나고 또 얼마되지 않아 모두 軍과 警察에 復權, 復職되었다.

특히 韓國의 刑事訴訟法은 이른바 公訴時效制度를 두고 있어 가장 엄중한 犯人犯罪도 事件 발생 후 15년이 경과하면 公訴時效가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韓國戰爭 이전과 그期間 중 또는 그 직후에 벌어진 대부분의 集團虐殺事件은 이제 완전히 免責되었다. 다만 集團虐殺은 非人道的 犯罪에 해당되어 國際法上 時效가 없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 被害者에 대한賠償과 原狀回復

1) 犠牲者 遺族에 대한彈壓問題

위와 같이 끔찍한 虐殺을 당했음에도 그 가족들이 제대로 經濟的 賠償을 받거나 名譽回復을 받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沈默을 强要당하였다. 政權이 바뀌어 그 피해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被害救濟를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報復을 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5·16군사쿠데타 이후 일말의 기대를 안고 被害回復을 요구하는 陳情書 등을 제출하였다가 拘束까지된 사례들도 많다. 위에서 본 聞慶虐殺事件, 居昌良民虐殺事件의 真相을 밝혀달라고 5·16 직후 陳情書를 냈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기조차 했다.

2) 名譽回復 問題

이들 犠牲者들은 멀쩡한 良民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대체로 '통비분자(通匪分子)'로 몰려 버젓이 戶籍上에 이러한 虛構的 事實이 기재되었다. 물론 이들을 虐殺한 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免責받기 위하여 한 짓이었다. 이러한 戶籍上의 기재로 말미암아 그 遺家族들은 '빨갱이 家族'들로서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했다. 韓國社會에서 '빨갱이 家族'이라는 이름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것은 바로 社會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居昌良民虐殺의 경우 國會立法으로 그와 같이 잘못된 戶籍의 기재를 수정할 수 있었다.

4. 結論

분명 冷戰의 막이 전세계에 걸쳐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韓半島에서는 그 冷戰이 존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南北의 갈등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冷戰시기에 벌어졌던 많은 人權侵害事件에 대해서 國家的으로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賠償을 실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 비록 軍事政府는 물러나고 이른바 文民政府가 들어섰지만 아직 軍事政府의 영향은 殘存하여 過去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金永三政府는 軍事反亂 內亂 殺人罪 등 政權 獲得過程에서 벌어진 잘못에 대해 全·盧 두 前職 大統領을 拘束하고 법정에 세워으로써 韓國의 過去清算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듯 싶었다. 실제 前職 大統領을 그것도 두 사람이나 함께 拘束한 것은 '世紀의 裁判'으로서 주목받을 만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現 政府의 意志였기보다는 열화 같은 국민들의 抗議와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5천명이 넘는 교수들의 抗議署名과 수백명의 歸護士들의 示威가 일어낸 결과였다. 더구나 두 前職 大統領과 最高指揮官 몇 사람을 拘束한 외에 별다른 過去清算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政治적 의도를 가진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過去의 잘못된 歷史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서는 언제나 올바른 歷史清算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게 마련이다. 清算할 過去가 있는 한 過去清算의 요구는 계속되는 것이다. 아직 수많은 虐殺事件의 진상이 안개 속에 있고, 사죄와 名譽回復, 賠償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犠牲者 遺族의 슬픔과 苦難은 계속되고 있다.

증언 1 : 濟州 4·3이란 무엇인가

金榮訓

● 들어가는 말

4·3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그 누구도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4·3의 명칭에서부터 性格糾明, 人命被害에 이르기까지 統一된 意見이 없이 여러 갈래로 나뉘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48년 4월 3일 勃發이래 1987년 6월 29일 6·29宣言까지 근 40년간 政府가 客觀的 真相把握 보다는 그대로 잊혀지기를 바랬고, 論議조차도 금기시 해 온데 그 責任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분석이 있을 수 없었으며 資料 또한 檢證을 거치지 않아 真實性과 거리가 먼 편협된 기록들이 대중을 이롭으로써 4·3에 대한 混亂과 誤謬를 增幅시키는結果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 比較的 客觀的으로敘述했다고 판단되는 資料들을 간추려서 4·3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 간추린 4·3의 歷史

1945년 8·15 解放과 더불어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委員會가 조직되어 활동하던 중 道昇格(1946년 8월)을 계기로 美軍政의 右翼強化 정책이 서서히 強化되어 가던 중 南勞黨 濟州道 委員會의 주도로 치러진 1947년 3·1절 제28주년 記念 示威에 대한 警察의 發砲로 6명 사망, 6명 중상의被害가 발생되었다.

이어 벌어진 全道의 總罷業을 계기로 人民委員會와 美軍政의 對立이 本格化 되어갔다. 陸地部의 應援警察隊와 西北青年團 등 極右團體가 派遣되면서 檢舉旋風 일어났고 道民들은 섬 밖으로 避身하거나 일부는 山에 올라 積極的인 武力對抗을 準備한다. 總罷業 이후 1년 동안 2,500명 가량이 구금됐고, 특히 1948년 3월, 警察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 민심을 자극시켰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해 소위 「人民自衛隊」라는 左翼武裝隊가 濟州道內 24개 支署 가운데 11개 支署를 一齊히 攻擊하였고 또한 警察, 西北青年團 宿舍와 國民會, 獨立促成會, 大同青年團 등 右翼團體襲擊을 시작으로 4·3은 시작되었다.

美軍政은 1단계 조치로 各道의 警察廳에서 1개 中隊씩을 差出, 8개 中隊 1,700명에 이르는 本土 警察兵力을 濟州로 移送하는 것을 승인하여 「警察作戰」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또 西青 단원들을 增派하였다. 또한 慕瑟浦 駐屯 警備隊 9聯隊에게 警察의 協助 아래 鎮壓作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다.

9聯隊長 金益烈 中領은 「先宣撫 後討伐」의 原則을 세워 武裝隊와 平和的인 解決方案을 摸索하고 南勞黨 濟州道黨 軍事總責 金達三을 만나 1948년 4월 28일 會談을 벌였으나 5월 1일 吾羅理 事件 등으로 무산되었고 事件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5월 6일자로 金益烈 中領을 解任시키고 그후 9聯隊를 해체, 이를 제11聯隊로 흡수시켜 11聯隊장에 朴珍景 中領이 任命되었다. 4.28 협상으로 한때 平和的인 解決方法이 摸索되기도 했으나 무산되어 事態가 惡化되었고, 5.10選舉를 전후해 武裝隊의 強力한 沮止鬪爭으로 道內 2개 선거구가 投票未達, 全國에서 唯一하게 選舉가 無效化되었다.

1948년 6월 18일 새벽 11聯隊長 朴珍景 大領이 그의 宿所에서 부하에 의해 暗殺당한 事件이 발생, 衝擊을 주었고 1948년 8월 金達三 등 5명이 海州에서 開催된 南朝鮮 人民代表者 會意에 참석해 버려 濟州道에서 발생했던 모든 抵抗이 北韓과 連繫된 政府崩壞 陰謀로 認識케하는 발판을 마련케 했고 이것이 바로 流血鎮壓 事態의 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警備司令部는 제11聯隊에서 본래의 9聯隊 병력을 배속 해제, 9聯隊를 再編成하여 聯隊長에 제11

聯隊 부연대장 宋堯贊 소령을 임명하였고, 11聯隊는 水原으로 원대 복귀하였다.

宋堯贊은 1948년 10월 中山間 焦土化 作戰을 採擇, 海岸線에서 5km 이상 떨어진 中山間 지대는 「敵性地域」으로 간주하고 中山間 部落 住民들을 모두 海岸地帶로 疏開시킨 후 中山間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을 「暴徒」로 간주 處斷한다는 布告令을 발표하였다.

이 作戰이 전개되는 동안에 가장 많은 人命被害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疏開令을 따르더라도 목숨을 앓는 경우가 있었고 疏開令을 하달받지 못한 일부지역 住民들은 討伐과정에서 集團의으로 牺牲을 겪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表善面 兔山里 주민 157여명이 한꺼번에 表善白沙場에서 射殺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 西清의 백색테러도 공포의 대상으로 민심을 자극시켰다.

1948년 12월 29일 제9聯隊은 철수하고 제2聯隊(聯隊長 咸炳善 중령)가 濟州道에 투입되었다. 李德九가 지휘하는 게릴라의 主力部隊는 聯隊 交替期를 이용, 공세를 취하였다. 討伐隊는 해안 마을마다 성을 쌓아 해 武裝隊의 은거지를 차단하였다. 1949년 1월 17일에는 海岸마을인 朝天面 北村里에서 가장 悲劇的인 「北村事件」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날 아침 細花주둔 3大隊 中隊 일부 兵力이 大隊本부가 있는 咸德으로 가던 도중에 北村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武裝隊의 奇襲을 받아 軍人 2명이 숨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오전 11시경 2개 小隊쯤 되는 武裝軍인이 共匪들과 内통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北村마을을 포위, 3백여 동의 家屋을 모두 불태우고 住民 수백 여명을 國民學校運動場에 집결시킨 후 차례로 인근 밭에 끌고가 軍·警 家族을 제외하고 銃殺했다. 이 사살극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上級 指揮官의 중지명령으로 일단 끝났지만 그 다음날 大隊本부가 駐屯했던 咸德으로 疏開된 주민 일부가 다시 處刑되었다. 결국 이틀사이 北村 住民 3백여명이 숨졌다.

1949년 3월 2일 濟州道지구 戰鬪司令部가 설치되면서 司令官에 劉載興 大領이 임명되었고 또한 제2聯隊長 咸炳善 大領을 둘 司令部 參謀長에 兼任 補職, 積極的인 掃蕩作戰을 전개하는 한편 宣撫活動도 竝行 推進되었다. 強溫 討伐作戰을 竝行 施行하던 2聯隊는 앞서 지적한대로 焦土化作戰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住民들이 山中으로 避難, 入山한 사실을 증시, 이들의 下山을 勸告하기 위하여 「宣撫工作隊」를 發隊하여 道內 각 마을을 순회하며 歸順勸告를 督勵하였다. 이 宣撫活動 전개 이후 中山間 지대를 해매던 주민들 가운데 하산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武裝隊 陣營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歸順者가 생겨났다.

新任 司令官 劉載興 大領은 「4월까지 殘存 暴徒들을 완전히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濟州에 부임하여, 馬무리 鎮壓作戰을 전개하였고 4월 李承晚 大統領의 방문과, 5월 國會議員 再選舉가 실시되는 등 점차 統治權이 회복되어 갔다.

劉載興 대령의 鎮壓作戰 결과 게릴라의 규모는 현저히 弱化되었고, 1949년 5월 15일 濟州道 戰鬪司令部가 해체되었다. 1949년 6월 7일 武裝隊 總責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討伐作戰은 小康狀態에 이르게 되었으며 1949년 10월 12일 濟州地域 戒嚴令이 해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이 발발되면서 濟州道도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6.25 勃發직후부터 保導聯盟 加入者와 入山者 家族 등이 미리豫備檢束되어 많은 人名이 濟州飛行場, 沙羅峰 등에서 처형되었고, 陸地刑務所에 수감되었던 4·3 連累者들이 즉결 處分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百祖一孫之地」에 묻힌 132명도 이때 희생되었다. 1950년 8월 20일 慕瑟浦에豫備 檢束되었던 사람들이 松岳山 北東쪽 日本軍 彈藥庫터로 끌려가 집단 사살되었다. 유족들은 그 뒤 7년만에 시신을 찾아 한곳에 安葬시키면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1백 할아버지에 한 자손의 묘역」이란 의미의 「百祖一孫之地」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1951년 3월 21일 慕瑟浦에 陸軍 第1訓練所가 創設되었고 武裝隊들의 활동은 크게 鈍化되었다. 1953년 1월 29일 대 遊擊戰 特殊部隊인 무지개 部隊가 漢拏山 作戰地域에 補強 投入되었고 이 部隊는 5개월 동안에 모두 7차례의 討伐作戰을 벌여 殘餘 게릴라들은 거의 소탕되었다. 1954년 9월 21일 濟州道 警察局長 申相默은 漢拏山 禁足地域을 해제, 全面開放을 宣布하여 6년 6개월간의 流血事態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최후의 게릴라 吳元權이 生捕된 것은 1957년 4월 2일이었다.

● 맷음말

歷史의敍述은科學的論理가뒷받침됐을때 가능하다. 그런데 4·3의 경우는 아직 제1차적資料發掘과檢證, 分析, 綜合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歷史의生命인事實性, 真實性과는거리가 면, 偏狹된記錄들이 대중을 이룸으로써 4·3에 대한認識의 혼란과 誤謬를增幅시키는 결과를낳게 했다.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歷史的事實을뽑아내는일은歷史家들의視覺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가능한한같은시대의 다른사람들과더나아가서未來의 사람들에게까지도동의를얻을수있어야만歷史的사실로인정될것이다.

여기에서실은자료들은그간4·3논의가不充分한가운데서散發的으로발표된것들을한데모은것이다. 따라서이는4·3에관한基礎的인자료들뿐이며앞으로보다정확한被害조사와真相糾明을통해4·3의歷史를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4·3의悲劇은엄청난人命被害를가져왔다는데이있다. 그런데 1949년 4월 1일자美軍秘密文書「4·3綜合報告書」에는“死亡者の80%이상이討伐隊에 의해사살됐다.”는기록이있으며, 이번에道議會의調查結果도84.2%가討伐隊에 의해犠牲된것으로 밝혀졌다.

政府와國會가4·3治癒를위한真相糾明과濟州道民의名譽回復에앞장서야한다는當爲性이바로여기에있다.

증언 2 : 5·18 光州民衆抗爭 過程에서 나타난 國家 테러

鄭壽萬

1. 光州民衆抗爭이 일어나기까지의 歷史的 背景

1980년 5월에 있었던 光州民衆抗爭은 民主化 要求를 짓밟고 새로운 獨裁政權을 세우려는 國家테러에 맞서 싸운 것으로 韓國社會運動史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事件이었다.

光州民衆抗爭의 發端은 1979년 12월 12일 金載圭 中央情報部長의 朴正熙 殺害로부터 시작된다. 61년부터 79년까지 鐵拳統治를 한 最高 責任者가 갑자기 죽자, 中央權力を 장악하기 위한 각 집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崔圭夏를 필두로 한 維新官僚集團은 점진적인 改革을 통해 再執權을 꿈꾸었고 全斗煥, 盧泰愚 등 新軍部는 총칼로 實權을 잡아 親美軍事政權을 維持하려고 하였다. 한편 解禁된 野黨 政治人們은 民主的인 政治秩序를 回復하여 大權을 노리고자 했고, 勞動者, 農民, 學生, 在野人士는 각 分野의 民主化鬪爭과 더불어 民主的인 民間政權을 수립하고자 했다.

12월 12일 新軍部가 鄭昇和 參謀總長을 暗殺事件과 關聯된다는 嫌疑로 강제 連行하였다. 이때부터 新軍部가 權力의 中樞를 掌握하기 시작하여 결국 5共 政權을 創出하였다.

1980년 5월은 韓國 民主化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重大한 時期였다. 學生들은 새 학기부터 總學生會를 새로 꾸리고 學院自由化 鬪爭을 벌였고 4.19를 기점으로 이를 政治民主化鬪爭으로 擴大해나갔다. 또한 野黨政治인, 在野人士, 勞動者 農民 등 각계 인사들이 非常戒嚴令을 解除하고 民主化 政治日程을 提示하라고 要求하는 대규모 示威를 벌였다. 이러한 각 부문의 民主化 要求는 5월 15일 서울역 大集會로 結集되었다. 10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示威指導部는 政治民主化 要求와 新軍部의 逐出을 내건 要求를 決意하였다. 그런데 崔政權은 그 要求事項을 받아들인다면 對話로 풀어나가자면서 일단 歸家를 勸告했다. 그러나 이미 中央권력은 新軍部에 손아귀에 있는 상태였고 崔圭夏 大統領은 그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따라서 崔政權의 懷柔策은 新軍部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시간벌기 책략에 지나지 않았다.

新軍部는 5월 15일에 各 部隊에 出動態勢를 갖추게 했고 서울 大集會 직후인 5월 17일 全國的으로 非常戒嚴을 擴大한다는 措置를 電擊的으로 發表했다. 그리고 각 大學에 軍隊를 駐屯시키고 모든 集會와 示威, 政治活動을 禁止하였다. 이후 國部의으로 單發의인 示威가 있었으나 모두 鎮壓되고 다시 荆棘의 세월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全羅南道와 光州는 全國에서 유일하게 군부의 非常戒嚴措置에 對抗하여 廣範한 鬪爭을 벌여나갔다. 全南地方은 高麗王朝 때부터 中央政治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또한 平野가 많은 穀倉地帶여서 官吏의 貪虐과 地主들의 橫暴에 시달려왔던 곳이다. 朴政權 때에도 野黨地域이라 해서 地域開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中央政界에 진출한 官僚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累積된 地域差別感情과 空輸部隊의 無差別한 殺傷과 暴行으로 인해 全南과 光州市民은 들고 일어나 武器로 武裝한 市民軍을 編成하여 싸웠다. 5월 18일부터 열흘간 生命을 걸고 光州를 지켜나갔던 것이다. 이期間에 空輸部隊에게 살해 부상당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러 戰爭을 除外하고는 單一 事件으로 最大의 人命被害를 記錄했다. 政權 奪取를 위해 같은 同胞를 수천명이나 殺害, 傷害한 것은 國家테러리즘이 얼마나 危險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5.18 被害者 證言 事例

1) 連行, 拘禁過程에서의 殘虐行爲: 5월 19일 空輸部隊를 示威 鎮壓過程에서 불잡힌 사람들을 全南, 朝鮮대로 移送하는 過程에서 갖은 暴行을 가했고 拘禁상태에서도 分풀이로 棍棒과 주먹 鏗打, 大劍 찌르기 등 殺傷을 자행했다. 또한 連行者를 각 大學에서 光州矯導所로 軍用트럭을 이용해 옮겼는데 이 過程에서 트럭에 최류탄을 터트려窒息해 죽은 사람도 있었다.

2) 女性에 대한 性暴行: 空輸部隊에 의해 자행된 集團性暴行 被害者의 대부분은 高等學生과 大學生

이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아직도 精神疾患으로 病院에 收容中이다. 길가던 女學生을 불잡아 인근 골목길에서 性暴行하기도 했고 商街 女從業員을 野山으로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暴行했다. 또한 언니와 동생을 끌고와 姉妹가 보는 앞에서 교대로 强姦했다. 여성들에 대한 性醜行은 公共場所에서 日常의 으로 벌어졌다. 示威加擔者 連行過程에서 젊은 여성의 경우 옷이 찢겼고 朝鮮大에 拘禁된 여성들은 발가벗긴 채 氣合과 鏟打를 받았다.

3) 住宅과 商街 亂入: 空輸部隊는 15일 오후부터 示威隊를 逮捕하려고 住宅과 商街에 亂入하여 器物을 破壞하고 主人과 從業員, 一家族을 鏟打하였다. 일곡洞 부근에서는 學生들이 集團的으로 自炊하고 있는 집을 搜索하여 自炊生을 鏟打 連行하기도 하였다. 光州 시내에서 示威隊가 解散한 뒤에는 商街에 들이닥쳐 銃劍으로 닥치는 대로 殺傷했고 建物 屋上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바닥으로 밀어 죽이기도 했다. 또한 空輸部隊는 作戰地域 주택가까지 搜索하여 市民들을 닥치는 대로 鏟打하고 帶劍으로 절렀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 젊은이가 있으면 示威加擔 與否를 가리지 않고 學生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무차별 鏟打 連行했고 이를 말리는 父母도 때렸다.

4) 老人, 婦女子들에 대한 殘虐行爲: 光州市內에서 空輸部隊의 蠹行은 젊은층뿐 아니라 男女老少를 가리지 않았다. 空輸部隊의 폭행을 지켜보다가 挽留하거나 꾸짖는 長年層, 老年層에게도 棍棒과 銃劍 머리판으로 구타했다. 示威隊列에 휩쓸려 있던 할머니를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가 하면 示威 구경 나와 있던 할아버지를 곤봉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5) 銃器 發砲와 良民 虐殺

ㄱ. 光州驛 發砲 상황--5월 20일 저녁 光州驛에서 示威隊에 밀리기 시작한 3空輸旅團은 자신들의 退却路를 마련하기 위해 市民들을 향해 集團發砲를 하여 多數의 死傷者를 냈다. 단순한 解散用 空砲彈을 쏜 것이 아니라 傷害를 目的으로 직접 發砲했고 이로 인해 住宅街 사람들도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또 밤 11시경 40명의 示威隊가 탄 大形버스가 光州驛으로 들어가다가 噴水臺 부근에서 空輸部隊의 집중총격을 받아 6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ㄴ. 道廳 앞 集團發砲--示威隊가 道廳을 占據하려 하자 空輸部隊가 이들에게 集團發砲 했고 또 錦南路 周邊 建物에 狙擊手들이 配置되어 銃擊을 가했다는 提報도 있다.

ㄷ. 全南大 앞 發砲狀況--道廳 앞 發砲가 있던 시각에 全南大 근처에서 작전을 전개하던 3空輸旅團도 集團 發砲하여 死傷者가 속출하였다. 崔美愛 씨의 경우 골목길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女中生도 全南大 앞을 지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ㄹ. 27일 도청 鎮壓作戰--새벽에 态行된 空輸部隊의 特功鎮壓作戰에서 수많은 死傷者가 發生했다. 그들은 도청 奪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示威隊를 殲滅할 目的으로 重火器를 動員하여 凄切한 殺戮作戰을 展開하였다.

6) 헬기의 機銃掃射: 軍 資料에는 光州에 투입된 헬기가 20여대이고 하루 8시간 運航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헬기들은 偵察, 宣撫뿐 아니라 機銃掃射 등 空中火力 支援과 犀牲者 屍身을 遺棄하는 데 쓰였다.

7) 重火器 使用에 의한 良民虐殺: 手榴彈 投擲은 5월 27일 道廳 特空作戰과 21일 朝鮮大 附近에서 사용되었다. 크레모아와 M60은 송암洞 作戰 때 사용되었고 市外廓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目擊者들의 證言이 있고 이 重火器들은 헬기에도 裝着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일본측 논문>

동아시아 냉전과 조선에서의 정치적 폭력의 기원

林 哲

들어가는 말

냉전의 종결과 신시대의 도래가 선언되고 시장경제와 의회제 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한 역사의 종언이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앞으로의 전망이 명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만들어진 한때의 유풀리즘을 제거해보면 모순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어떤 상황이 자연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모순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조선분단문제라는 점에서 조선인은 무엇보다도 현대와 미래에 본질적인 관심을 갖는 대만인과 일본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조선분단을 초래한 역사 전체의 인식은 그 시작에서 남북조선에는 본래, 특히 미국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 장기간 금기시되거나 왜곡되어온 것은 명확하다. 그것이 새로운 상황하에서 어떻게 변해갈까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에는 어쨌든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북측의 實情, 모순은 물론 그들에 의한 사태에 대응한다는 문제도 포함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조선현대사의 주요한 과제인 것도 당연하다.

조선에서 새로운 상황으로서 기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에 따르는 동서 냉전체제의 변화, 제국 가간의 힘관계의 일대 변화를 반영하고 1991년 말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합의서'가 남북 쌍방 당국자에 의해 채택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후의 사태 진행은 남북민중뿐 아니라 현대세계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민중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즉 먼저 남북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인식상 행동상의 제약 해소를 노려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간다는 약속을 세계에 대해 행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사태는 점점 진창으로 빠지는 것은 왜일까. 결국 조선분단문제에 관한 인식이 또한 종래의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깊어지지 않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문맥에 즉하여 생각해볼 때 직접적으로 냉전체제의 산물이라 말할 수 없는 요소, 즉 식민지시대 이래의 조선사회 분열 대립에도 깊숙히 기인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늘의 관점에서 인접지역과 동아시아, 세계적인 의미에서도 관계하는 여러 분야에서 막대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심포지엄 주제도 분명 그것을 위한 시도라고 보여진다.

1. 조선인민공화국이 지향하는 것

조선분단문제를 주로 하는 조선현대사만큼 왜곡과 데마고기에 지배되어온 역사는 유례가 없다. 이 보고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필자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설명해두자. 즉 해방 직후의 조선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신민주주의적 혁명을 동반한 독립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운형의 건국동맹을 비롯하여 일본의 패전에 즈음하여 석방을 쟁취한 정치범 독립운동가들이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각지에서 부상하고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더 나아가 과거에 민족적 죄악을 범하고 금후도 신국가의 건설을 방해할 가능성 있는 반동세력과 싸우기 위해 '국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세력에 의한 통일전선의 결성'이 호소되는 동시에 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해온 투사들과 그 지도적 집결체를 환영하는 것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이 선언되었다는 의미는 다양한 문제는 있다손 치더라도 애매한 점도 적지 않다. 아무튼 '노동자 농민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국가' '전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완전히 실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정권'을 표방하는 인민공화국 55명의 중앙인민위원회에는 주지하듯이 일제와

싸워왔다고 생각되는 광범한 인사가 망라되었을뿐더러 시정방침에는 일본인과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와 농민에의 무상분배, 소작표 3.7제 등 민주적 정책이 내걸린 것이고 좌파의 영향이 현저하지만 사회주의정권은 아니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거족적 정부이고 엄격히 말하면 대일협력자 즉 친일파의 문제만이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남에서는 인민공화국은 7도, 12시, 131군에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각 위원회는 인민공화국과 같은 구조에서 선전부, 치안부, 식량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되고 농민조합과 노동조합, 치안대 등의 대중단체와 함께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을 조직하고 활동에 참가시킨 사람들에는 공산주의자, 항일운동가, 학생, 동원해제된 군인, 농촌의 지주, 엘리트층, 때로는 일제시대 관리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9월 6일 상륙한 미군 24군은 조선총독부의 항복을 접수하는 것과 함께 군정을 실시하고 총독부의 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군정청을 발족시켜 군정의 고문으로서 저명한 친일파와 인민공화국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민주당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인민공화국과 대립한 것이다. 이 과정을 가장 빨리 체계적, 실증적으로 밝힌 부르스 커밍스에 의하면 이 정세를 혁명적으로 간주한 미국측에게는 이데올로기적이나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인민공화국의 미래는 없었다고 한다. 확실히 이 점이야말로 '조선에서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의 기원과 그후 사태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구하고자 한다. 1945년 시점에서 1950년 6월의 조선전쟁의 발발까지는 중앙-지방-남북 차원과 각각 차원에서 점차 폭력에 의한 지배, 통치가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질적으로 격화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1945년 당시의 조선 남부 작은 마을에서 자국의 독립을 담보하려는 활동에 세계적인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민족해방운동의 진전을 막고자 혼신의 힘을 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중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민중의 해방운동측과 미국 군정이 각자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조선 안에서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대립 구도는, 해방에서 45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10월인 민항쟁에 이르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조선민중 속에 왜 탄압받고 살해되었나를 이해할 수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면서 엄청난 잘못으로 결정지워진 것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의 의미는 그후의 문제를 주목할 때 특히 오늘날의 아시아 NIEs의 경제적 성공만을 주목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에서 크다 하겠다. 즉 오늘날에도 조선해방 1년사에는 그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군정의 행동과 인민공화국 지방인민위원회

3. 10월 인민항쟁

결론을 대신하여--냉전과 테러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시기의 치안법과 냉전체제

水野直樹

들어가는 말

1945년까지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한 조선 대만은 제2차대전후 엄혹한 냉전체제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투쟁 하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을 억압하는 다수의 법률이 시행되었다(혹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치안법은 냉전체제 분단국가체제에 유래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의 치안법(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1) 일본의 식민지에서 치안유지법체제의 특징을 일본 내지의 그것과 비교, 조선과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찰하고 2) 치안유지법체제가 전후 냉전시대에 어떻게 이어졌는가 검토하고자 한다.

1. 식민지시기 조선·대만에서의 치안유지법체제

1) 식민지에서의 치안체제

근대 일본은 대만, 영태?, 조선을 영토로 하여 지배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다양한 식민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치안유지가 제일의 과제임을 식민지지배자는 인식했다. 그런 까닭에 군대 경찰을 비롯한 강대한 치안기구가 구축되는 동시에 민족해방운동, 공산주의운동, 각종 민중운동을 단속하고 탄압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서 20년대에 걸쳐 사상사건으로서 다룬 것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관한 사건이었다.(제동영치 편,《고동법원검사장훈시통첩유찬》 1942)

치안유지법(1925년 제정)

대정8년제정 제7호([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1919년 제정)

보안법(구 대한제국의 법률, 1907년 제정)

황실에 대한 죄(1907년 형법 제73조~76조)

내란에 관한 죄(1907년 형법 제77조~80조)

형법 제105조의 2~4의 죄

소요죄(1907년 형법 106,107조)

신문지법(구 대한제국 법률, 1907년 제정)

신문지규칙(병합전 통감부령, 1908년 제정)

출판법(구 대한제국 법률, 1909년 제정)

출판규칙(병합전의 통감부령, 1910년 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건(1926년 제정)

폭발물 단속벌칙(1884년 제정)

그외 사상운동에 관련한 법

식민지인 조선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사용된 법은 이같이 다수에 의해 각각의 성격도 달리하였다. 각각의 법이 제정된 시기와 대상, 법 그 자체의 성격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일본 법률을 조선에 시행한 것(치안유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폭발물단속벌칙), 조선총독이 발포한 명령이 법률을 대신한 것(대정8년제령 7호), 구대한제국시대의 법률(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병합전 통감부령으로서 주로 일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 규칙(신문지규칙, 출판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식민지에서 치안법제의 복잡한 존재방식을 모두 설명할 여유는 없다. 치안유지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치안유지법이야말로 식민지 치안법제의 근간이고 지배자에게는 민족해방운동, 각종의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유지법이 전

후 냉전체제 하에서 다시 만들어져 한국에서는 현재에도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

2) 일본과의 차이

여기서는 식민지에서 시행된 치안유지법이 일본본국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고찰한다.

첫째로 치안유지법의 제정 시행과정의 문제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3월 일본의 의회를 통과하여 같은해 4월 22일 공포, 5월 12일 시행되었지만 식민지인 조선 대만 열대에서도 시행되는 칙령이 5월 8일에 나오고 일본본국과 같은 5월 2일에 시행되었다. 문제는 본국의 의회에서 성립한 법률이 의회와는 무관계한 식민지(식민지에서는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에 그대로 시행된 것은 식민지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을 나타낸다. 전전의 일본에서 법률은 주민의 의사를 불충분하게 반영하는 의회가 만들었다(치안유지법에 관해서도 정부안이 부분적으로 시정되었다). 그런데 식민지는 그 틀에서 제외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강제받았다. 애초에 치안유지법이 식민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치안유지법의 운용과정 문제다. 일본본국에서는 당초 공산당 등의 운동에 대해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 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공산주의적 색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조선 독립, 대만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모두 치안유지법에 정해진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라고 간주하고 이 법 적용을 받았다. 1930년에는 조선의 독립=제국 영토의 찬탈=천황통치권의 축소=국체의 변혁이란 해석이 판례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치안유지법의 확대 해석 확대 적용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재외 조선인 대만인에의 적용문제다. 이것도 치안유지법의 확대해석 확대 적용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치안유지법 제7조에는 "이 법은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이 법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해졌다. 이 조문 자체, 치안유지법에 선행한 조선의 치안법령인 대정 8년(1919) 제령 제7호의 규정을 이어받은 것이다.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이 해외에서 왕성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문이 이용되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등에 대한 탄압이 1920년대 후반에 잇따르고 조선 내에 필적하는 사람들이 점거 투옥되었다. 이런 재외 조선인에의 적용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조약상은 근거 없는 영사관 경찰 활동을 통해 행해진 것이다. 일본의 치안유지법 체제는 식민지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인 중국으로 그물눈을 확대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넷째로 외국공산당원에의 적용문제다. 재외 조선인 대만인 속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 많았다. 1930년 전후에 간도(길림성 연길, 화룡, 왕청, 훈춘, 4현)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는데 그후에도 조선민족해방을 추구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일본당국은 이 사람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식민지해방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원은 식민지 해방=조선 독립=제국영토 찬탈=천황통치권 축소=국체 변혁을 노리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치안유지법이 일본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민중 운동과 대결하는 성격을 갖는 법률이었음을 보여준다.

일본 이외의 식민지에서 치안유지법의 다섯째 문제는 사형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안유지법에 의한 처벌은 일본본국에 비해서 식민지, 특히 조선에서 가혹했는데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 것도 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조선 민족해방운동, 특히 재외 조선인의 운동은 무력을 동반한 형태인 것이 많았다. 이들에 대해 일본당국은 치안유지법과 형법의 살인 방화 강도죄 등을 적용하여 중형에 처했다. 필자가 집계한 불완전한 숫자에 의하면 1920년대 후반부터 40년까지 약 40명의 조선인이 치안유지법에 걸려 사형판결을 받았다. 형법의 죄도 동시에 적용되어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식민지 독립=국체 변혁을 노리는 무장투쟁을 전개한 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당국의 자세가 표출되고 있다. 당국측의 자료에도 그들에 대한 사형판결은 치안유지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이 동일한 치안유지법이라도 일본본국과 식민지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아주 달랐던 것이다.

3) 전향의 문제

다음으로 우리가 고찰해야 하는 것은 같은 일본 식민지에서도 조선과 대만에서는 치안유지법의 표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다.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존재 방식 차이, 이에 대응하는 일본측의 태도와 치안기구의 차이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세한 검토는 여기서 생략한다.

조선과 대만의 큰 차이는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하여 구축한 사상 전환의 제도에 나타난다고 보인다. 조선에서는 1936년에 사상법 보호관찰제도, 1941년에 사상법 예방구금제도가 실시되었지만 대만에서는 이것들이 실시되지 않고 끝났다. 조선에서나 대만에서나 식민지지배에 저항하는 자를 전향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 지배체제에 끌어들여 침략전쟁에 협력케 한 것은 식민지지배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인가?

대만에서는 사상법이 적었기 때문에 일본본국과 조선과는 달리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석방된 사상법은 경찰의 요감시인에 편입되어 감시받았다. 예방구금제도도 비전향의 사상법이 그만큼 많지 않은 사회에 주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당국측은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대정 11년(1922년) 칙령 제407호 개정 건]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聚》 제65편 소화15년 권1)

확실히 그같은 측면이 강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이상으로 대만에 부과된 보감제도가 민족의 상호 감시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보호관찰제도, 예방구금제도가 중요치 않았다고 생각한다.(이 점에 관해서 대만 참석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보호관찰제도, 예방구금제도가 대만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은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체제의 존재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전향하느냐 않느냐가 엄격히 추궁되고 그것이 민족해방에 배신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되었다. 식민지지배의 최고책임자가 '반도 형무소에서 비전향 수형자의 근절을 기대한다'(1939년 6월 22일 형무소장 회의에서 미나미 총독 훈시)라고 말하고 있듯이 비전향 사상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전향시키는 정책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도 전향하지 않는 자는 영구히 가두는 제도로서 예방구금제도가 일본본국에 앞서서 실시되었다.

필자는 대만 사정을 알지 못해서 틀린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만에서는 조선 만큼 체계적 조직적인 사상 전향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냉전체제기에 한국에서 사상 전향정책이 제도로서 존재한 것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사상전향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2. 냉전체제에의 유산(한국의 경우)

1) 법의 성격

치안유지법이 국체=천황제를 공격 비판하는 것을 탄압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 그에 관련한 자를 탄압하고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해왔다. 반국가단체란 규정은 당연히 정통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 분단국가체제와 한쪽을 정통국가로 하는 이데올로기는 국체를 일본의 정통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와 통한다. 더구나 그같은 이데올로기를 법에 의해 합리화하고 옹호하고자 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을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반공산주의라느는 점에서 공통성이 보이는데 반공은 이 법률 성격의 일부에 불과하다. 국체 정통국가에 반대하는 자는 공산주의자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2) 사상전향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기에 제도화된 사상전행제도가 한국에서 계승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전향자의 조직화가 과해진 것. 식민지기에는 보호관찰제도 아래에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1938년) 이것이 개편된 대화숙(1941년)이 설립되고 전향자의 생활을 감시하고 황국정신을 이식하고 전쟁에 협력시키는 정책이 취해졌다.

한국에서는 1949년에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이 만들어져 좌익활동 전력자 등이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다. 감시, 전향 강요, 체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식민지기의 사상보국연맹 등과의 차이는 보국연맹이 치안유지법에 의해 기소 투옥된 경험 있는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데에 비

해 보도연맹이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재판 전에 조식하고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그런 까닭에 보국사상연맹이 3300인의 가입자(1940년 말 현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1944년 까지 4100인이 된다)였던 것에 대해서 보도연맹 가입자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명에 달한다. 조선전쟁 발발 직후에 보도연맹 가입자가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도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고 있다.

3) 보호처분

식민지기에 실시된 보호처분은 이미 말한 대로 보호관찰(1936년부터 1945년까지)과 예방구금(1941년부터 1945년까지) 두 종류였다.

한국에서는 1975년에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어 보호감호처분, 주거제한처분, 보호관찰처분 세 종류의 보안처분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보호감호가 식민지기의 예방구금에 주거제안과 보호관찰이 식민지기의 보호관찰에 대응한다.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하는데 식민지기의 보호관찰 예방구금과 같이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전향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서준식씨 등 예방구금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것을 모조리 말하고 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은 국내외에서의 비판을 받고 폐지되었는데 그것에 대신하여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처분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사상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한 번 국가에 거역한 사람은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행동을 제한하는 사상에 기초한다. 식민지기 냉전 분단국가체제기에 공통된 국가이데올로기이다.

끌맺으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냉전 분단국가체제가 성립한 194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이 대폭 개정된 것이 여러 차례인데 비하면 국가보안법의 불변성은 현저하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분단국가체제의 기본법으로서 계속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식민지기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라면 그 폐지는 냉전 분단국가체제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식민지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탈식민화와 탈냉전체제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그것에 집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에의 냉전 분단국가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식민지지배의 책임이 여태껏 해결되지 않는 것, 역사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과 책임을 묻는 것을 나타낸다.

극동에서의 냉전과 일본

井 上 清

1.

1945년 8월 일본천황은 연합국의 대일본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고 항복했다. 일본 전토는 곧바로 연합군의 이름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미군에 점령 지배되었다. 미국은 점령의 최초기에는 포츠담선언이 일본에 부과한 민주화와 비군국화를 진행시켰다. 그 집중적 표현은 일본에 신헌법을 제정 실시한 것이다(1946년 11월 3일 제정, 47년 5월~3일 시행) 신헌법은 주권재민, 전력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 부정, 평화주의를 원리로 하였다.

그때 이미 미국과 소련의 전세계의 패권 쟁탈, 냉전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항일전 승리하의 중국에서는 국민당을 원조하여 전중국을 지배코자 하였고, 미국이 소련의 앞잡이라고 간주한 중국공산당의 세력을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민 대중과 결합한 공산당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세하여 48년 초에는 공산당의 전국적 승리가 분명히 전망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대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이제까지 미국은 일본을 미국에게 무해한 소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제는 일본을 동아시아에서의 반공의 보루, 극동의 공장으로 재건하는 전력으로 대전환하였다.

2. 조선전쟁과 일본 재군비의 시작

1948년 8월 조선의 북위 38도선 이남, 미군의 점령지역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같은해 9월 38도선 북쪽, 소련군의 점령지역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설되었다.(그와 함께 북에서는 소련군이 모두 철수하였다) 쌍방 모두 전조선의 통일국가가 되고자 대립 항쟁하였다. 그 대립에서 50년 6월 25일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정부는 곧바로 유엔 안보이사회를 열어 북조선이 적대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때 소련 대표는 결석하여 미국은 쉽게 목적을 달성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맥아더는 일본공산당의 기관지가 북조선을 옹호하는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발행 정지를 일본정부에 명령했다. 이것을 시발로 하여 잇달아 공산당 탄압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으로 재일 미군을 조선에 출동하고 또한 일본의 상선에 미군의 군수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였다.

7월 8일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7만 5천명의 국가경찰예비군의 창설, 해상보안청의 정원 8천명의 증원에 의한 해상보안대 창설을 명령했다. 그 경비는 당해년 국가예산 중에 특별히 많은 액수로 계상된 국채상환비를 유용하는 것을 명했다. 일본정부는 이 지령을 신속히 실행, 8월 10일 일경찰예비령을 공포, 군대에서도 23일에 시급히 전국에서 7천명의 예비대원이 입영하고 연말까지 7만 5천명의 예비대 창설을 완료하였다. 그 훈련, 교육은 미군의 지도 아래 구일본군 장교 하사관의 지원자를 이용하였다. 이런 대사업이 이렇게 빨리 완료한 것은 실은 조선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점령군과 일본정부는 극비에 준비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윽고 구 일본군의 추방이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가, 관료, 경찰관, 각종 사회단체의 간부에서 추방된 자도 잇달아 추방을 해제하였다.

정부는 경찰예비대는 미군이 조선전쟁에 출동한 후에 만들어진 일본 국내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문자 그대로 경찰예비대에서 일본 재군비의 첫걸음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52년에 경찰 예비대는 보안대가 되고 해상보안청의 해상경비대와 함께 보안청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2년 후에 보안대는 육상자위대,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되고 새롭게 공중자위대도 만들어져 각 자위대는 각각 幕僚監部를 갖고 그들의 통합막료감부도 만들어지고, 이외 장교, 하사관 양성학교, 의료위생기관 등도 갖춘 근대적 육해공군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다면 자위대를 군대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서 당시 정부는 자위대는 군대이지만 현대전을 효과적을 치룰 수 있는 戰力이 아니다. 따라서 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한 헌법 제9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자위대는 전력 없는 군대이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윽고 자위대 육해공군 장비가 현대의 세계 일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전력 없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자위를 위한 군비는 헌법위반이 아니다. 자위 목적으로 핵병기를 갖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57년 기시 수상)